



# 2021 몬천업무편람



행정안전부



# 목 차

## I. 총 론

1. 목적 및 정의 .....	3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8
3. 유관기관의 역할 .....	9
3-1. 한국온천협회 .....	9
3-2. 온천전문검사기관 .....	10

## II. 온천의 개발

1. 온천의 개발 개요 .....	17
1-1. 온천개발 법령 체계 .....	17
1-2. 온천개발 절차별 주요내용 .....	19
1-3. 온천개발 승인 취소 절차 .....	21
1-4.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해제 절차 .....	22
2. 온천의 굴착 .....	23
2-1. 굴착허가 .....	23
2-2. 이행보증금의 예치 .....	25
2-3. 토지의 원상회복 .....	27
2-4.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	29
3. 온천의 발견 .....	32
3-1. 온천발견 신고 및 수리 .....	32
3-2. 온천발견신고 수리 제한 및 취소 .....	36
4. 온천공보호구역 .....	39
4-1.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	39
4-2.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	42

5. 온천개발계획 .....	44
5-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44
5-2. 온천개발계획의 변경 .....	48
5-3. 온천개발계획의 취소 .....	50
5-4. 온천개발계획 인·허가 의제 .....	51
5-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54
5-6. 온천개발사업의 시행 .....	57
6.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	58

### 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 관리

1. 온천의 이용허가 .....	63
1-1. 온천이용허가 .....	63
1-2.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	70
1-3. 온천의 공동급수 .....	71
2. 온천의 보전·관리 .....	72
2-1.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	72
2-2.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73
2-3. 온천자원의 조사 및 관측 .....	75
2-4. 오염방지명령 및 출입검사 .....	77

### Ⅳ. 온천제도 운영

1. 온천발전종합계획 .....	81
2. 보양온천 .....	81
3. 온천도시 .....	85
4. 온천종사자 교육 .....	86
5. 기타 .....	88

**V. 수수료 및 벌칙**

1. 수수료 .....	93
2. 벌칙 .....	94
3. 과태료 .....	95
4. 규제의 재검토 .....	96

**VI. 참고자료**

1.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101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	109
3. 온천전문검사지침 .....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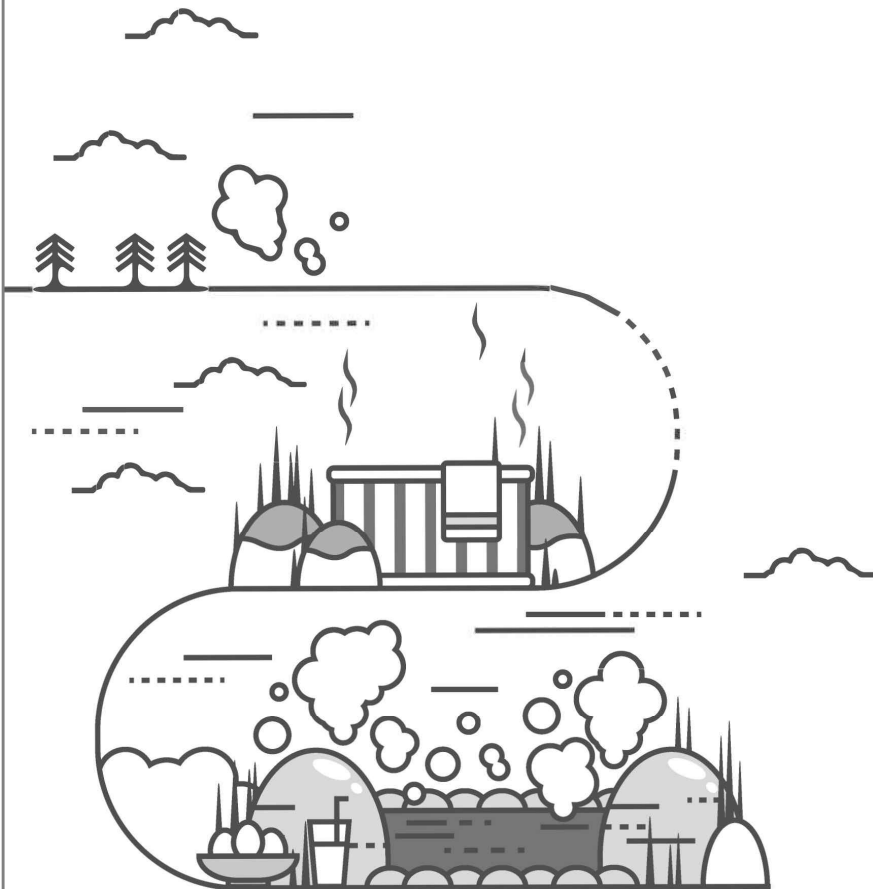
**VII. 온천법령집**

1.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	165
---------------------------------	-----



# I. 총론

1. 목적 및 정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유관기관의 역할







# I 총론

## 1 목적 및 정의

### > 목적

- 온천법령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
- 온천업무편람은 온천법령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

### > 온천의 정의

-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기준에 적합한 것
- 다음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1. 질산성질소( $\text{NO}_3\text{-N}$ )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 $\text{C}_2\text{Cl}_4$ )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 $\text{C}_2\text{HCl}_3$ )은 0.03mg/L 이하일 것

**[온천의 음용·목욕용 수질기준]** 온천의 음용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별표1], 온천목욕장 수질기준은 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별표3]을 따름

**[판례]** 「온천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온천요건으로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라함은 양수기 등의 작동에 따른 인위적 발열요인을 뺀 용출 당시의 순수 온도가 섭씨 25도 이상인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수의 온도를 높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의 양수방법에 의하여 지상으로 양수하였을 때의 온수의 실측온도가 섭씨 25도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3052 판결 참조)

##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정의 및 권리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한함)
-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

- 온천원보호지구(구역)내 토지굴착에 대한 우선 허가
- 온천의 이용에 대한 우선 허가
-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용자·알선 등 필요한 지원
- 온천개발계획 수립 및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제시
- 보충적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신청 및 온천개발계획 승인 신청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획득방법]** 온천우선이용권자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온천발견 신고인(또는 온천공 소재 토지소유권자)이 주변에 굴착허가, 온천발견신고를 통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법제처 해석 08-0253 참조)

### 【 법령해석 】 온천우선이용권자(법제처 해석 07-0364)

**[질의요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위 규정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인지?

**[회 답]**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이 아닌 토지소유권자로부터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해당 토지를 이전받은 소유권자는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닙니다.

【법령해석】 온천우선이용권자(법제처 해석 08-0041)

**[질의요지]**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가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한 신고인으로부터 그 지위를 승계 받으면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최초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의 지위는 승계 받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에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는 최초 온천발견 신고인의 지위를 승계 받을 수 없으므로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유]** 위 규정을 종합해 보면,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에게는 특별한 법적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온천공 소재 토지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은 경우에 굴착허가나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온천을 발견한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을 등재하는 등 필요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온천법령 어디에도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절차나 그 지위승계의 허용가능성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안에서 최초 온천발견신고인이기만 한 자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온천발견신고인의 지위를 승계시키기 위하여 온천관리대장상의 명의변경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천관리대장에 온천발견신고인의 성명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 집행상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직접 변경할 것의 이행을 시장·군수에게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기 위하여 온천발견신고인의 명의변경이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353 판결)

【법령해석】 온천우선이용권자(법제처 해석 08-0430)

**[질의요지]**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개정되어 2006. 7.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개정 온천법”이라 함) 시행 전에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 토지의 현재 소유자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될 수 있는지?

**[회 답]** 온천발견 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개정 온천법 시행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같은 법 시행 후의 같은 법 제2조제2호 단서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되는 것이고, 개정 규정 시행 후로 한정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 본문의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그러한 지위를 승계받아야 온천우선이용권자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판례]** 온천은 그것이 용출하는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독립한 물권의 객체가 아닌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온천법」에서는 온천발견자의 권리를 「광업법」상 광업권과 같은 별도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법제처 해석사례 05-0100, 대법원 1972. 8. 29. 선고 72다1243 판결 참조)(제주지법 1998. 8. 27. 선고 98구215 판결)

**【법령해석】 토지의 굴착허가 신청 등(법제처 해석 08-0253)**

**[질의요지]** 가. 2001. 1. 26. 법률 제6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온천법」(이하 “구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나.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해당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온천법」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이후 신고 수리된 해당 온천공이 속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온천법」 제2조제2호의 온천우선이용권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아님)가 굴착하고자 하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해당 온천발견 신고인은 온천원보호지구 내 온천수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온천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안정적이고 확실한 온천발견 신고인에 한하여 온천 우선이용허가의 혜택을 부여하고 온천 개발을 둘러싼 이권 분쟁과 무질서한 온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온천우선이용 등 혜택의 수혜자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된 것으로, 현행법상 그 혜택의 수혜자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범위 또한 법령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온천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우선하여 토지 굴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질의의 내용과 같이 구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 신고를 하여 수리된 자가 그 신고의 수리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질의 가에 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온천법」상의 온천우선이용권자 즉, 온천발견 신고인으로서 그 신고의 수리 당시 해당 온천공 소재 토지를 소유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토지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

### ▶ 지방자치단체

-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

#### 【 행정안전부 역할 】

- 온천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지도관리
- (특)한국온천협회 승인 및 지도관리
- 보양온천 승인, 온천도시 지정

#### 【 시·도지사 역할 】

- 온천발전 세부계획 수립·이행
- 온천공보호구역 승인
- 온천개발계획 승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고시 및 해제
- 보양온천 지정

#### 【 시장·군수 역할 】

- 온천발전 세부계획 수립·이행
- 굴착허가, 발견신고수리, 동력장치설치허가, 온천이용허가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고시 및 해제
- 온천개발계획 신청
- 정기온천자원조사(5년마다), 수질 및 성분검사, 출입검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관한 특례(온천법 제28조)]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인정(법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적용)

### 3-1. 한국온천협회

#### ▶ 개요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변경도 동일)
- 온천협회는 법인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

#### ▶ 온천협회의 사업

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일반회원 : 온천사업자, 특별회원 : 지방자치단체)
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
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온천협회에 온천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 온천협회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별회원 가입 등 지자체 지원 확대 필요

#### 【 온천협회 주요 위탁사업 】

- 온천종사자 교육(법 제26조)
- 수질·성분검사(법 제19조),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전문검사(법 제24조)
- 온천자원관측 사무(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

## ▶ 온천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1.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외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협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 온천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

## 3-2. 온천전문검사기관

### ▶ 개요

- 정의
  -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안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 등록 절차
  -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
  -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설립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1. 전문인력
  -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 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년,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
- 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2. 장비(임차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

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 사용 장비)

다. 수위측정장비

라. 수량측정장비

마. 야외수질분석장비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온천법 개정, '21. 6월 시행 예정)

**[전문인력기준 판단기준]** 온천전문검사기관 전문인력기준 규정 취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인력이 온천전문검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인력이어야 함**(법제처 해석 16-0346 참조)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및 관리**

○ 등록 불가조건

- 1.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2. 온천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등록 관리(행안부장관)

- 1. 등록대장 등재 및 관보예의 게재
- 2. 등록증의 교부

○ 관리 감독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 변경사항

1. 전문인력
2. 장비
3.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
  - \*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과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안부장관에게 신고

▶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사항(1년이내)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등록취소)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등록취소)
  - \*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제7조제4항제2호	등록취소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7조제4항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제7조제4항제4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5.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5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6호	등록취소	

### <온천전문검사기관 조사·검사 현황(온천전문검사규정)>

종 류	검사시기	온천법령 조문
온천부존조사	굴착허가 신청	법 제12조제3항, 영 제13조제1항
온천공조사	온천발견신고 수리	법 제21조, 시행규칙 제13조
온천공영향조사	온천발견신고 수리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3호
온천자원평가조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온천개발계획 수립	법 제5조·제6조, 영 제3조·제6조 법 제10조, 영 제6조·제7조
정기온천자원조사	최초 온천이용허가, 이용허가 연장(5년)	법 제16조 및 제24조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5조
성분검사 성분검사(유황·유리탄산)	5년 1회 매년 1회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12조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등록일	비고
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00.10.10.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유성구	'00.10.10.	
3	한국중앙온천연구소	서울 금천구	'00.12.28.	
4	(주)하나엔지니어링	울산 울주군/경기 안양시	'00.12.28.	
5	(주)한국건설엔지니어링	경기 광명시	'00.12.28.	
6	(주)세기종합기술공사	세종시/서울 서초구	'00.12.28.	
7	중앙컨설턴트(주)	서울 강남구	'08.8.26.	
8	(주)옥수개발	서울 송파구	'12.7.23.	
9	(주)진산	제주 제주시	'12.12.3.	
10	(주)지오엠	경남 김해시	'15.2.6.	

## Ⅱ. 온천의 개발

1. 온천의 개발 개요
2. 온천의 굴착
3. 온천의 발견
4. 온천공보호구역
5. 온천개발계획
6.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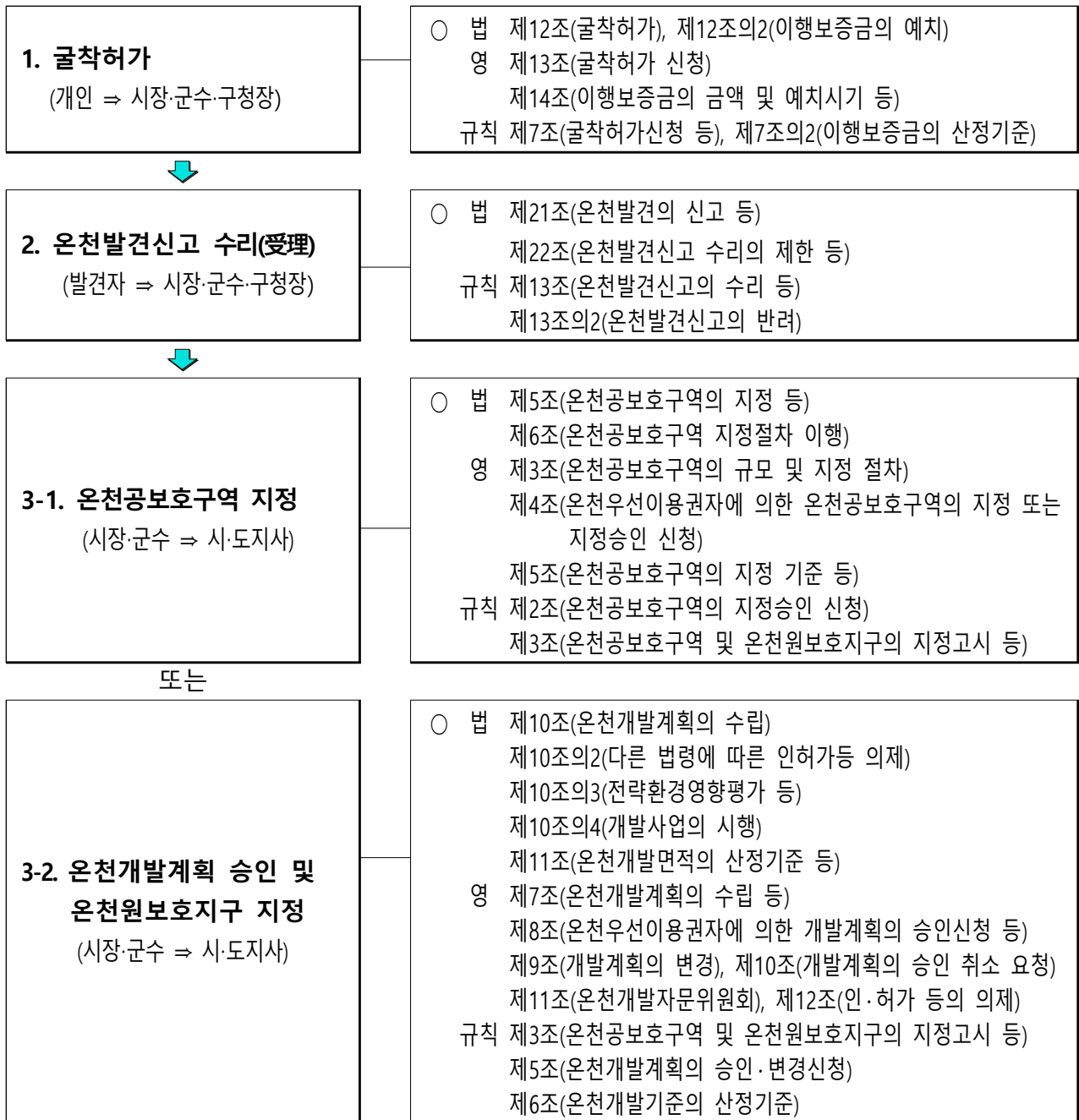




## II 온천의 개발

### 1 온천의 개발 개요

#### 1-1. 온천개발 법령 체계



**4. 동력장치설치 허가**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14조(동력장치설치의 허가)
- 영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 규칙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5. 온천의 이용허가**  
(온천사업자 ⇒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 영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 규칙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 제10조의2(온천표시)
-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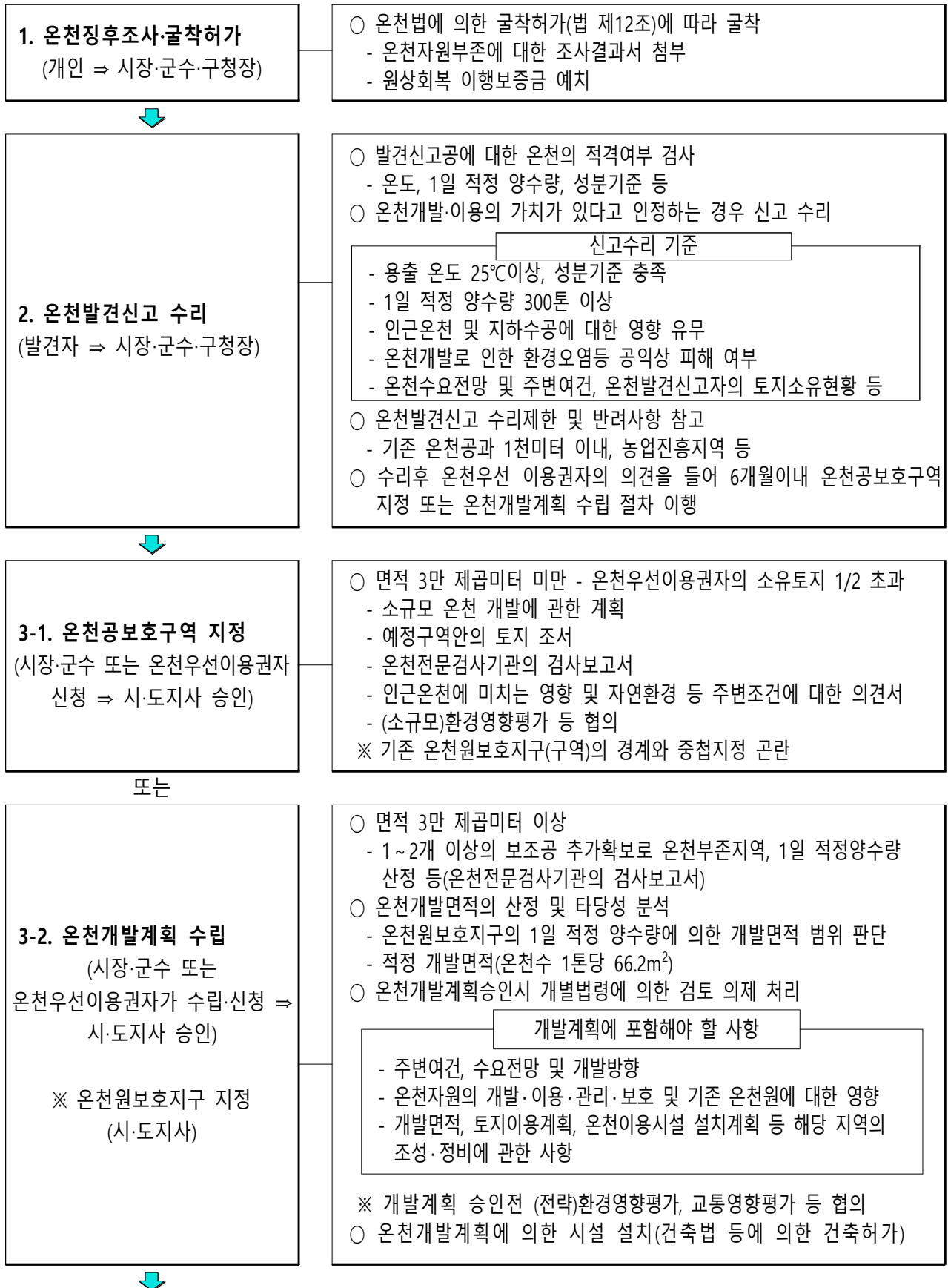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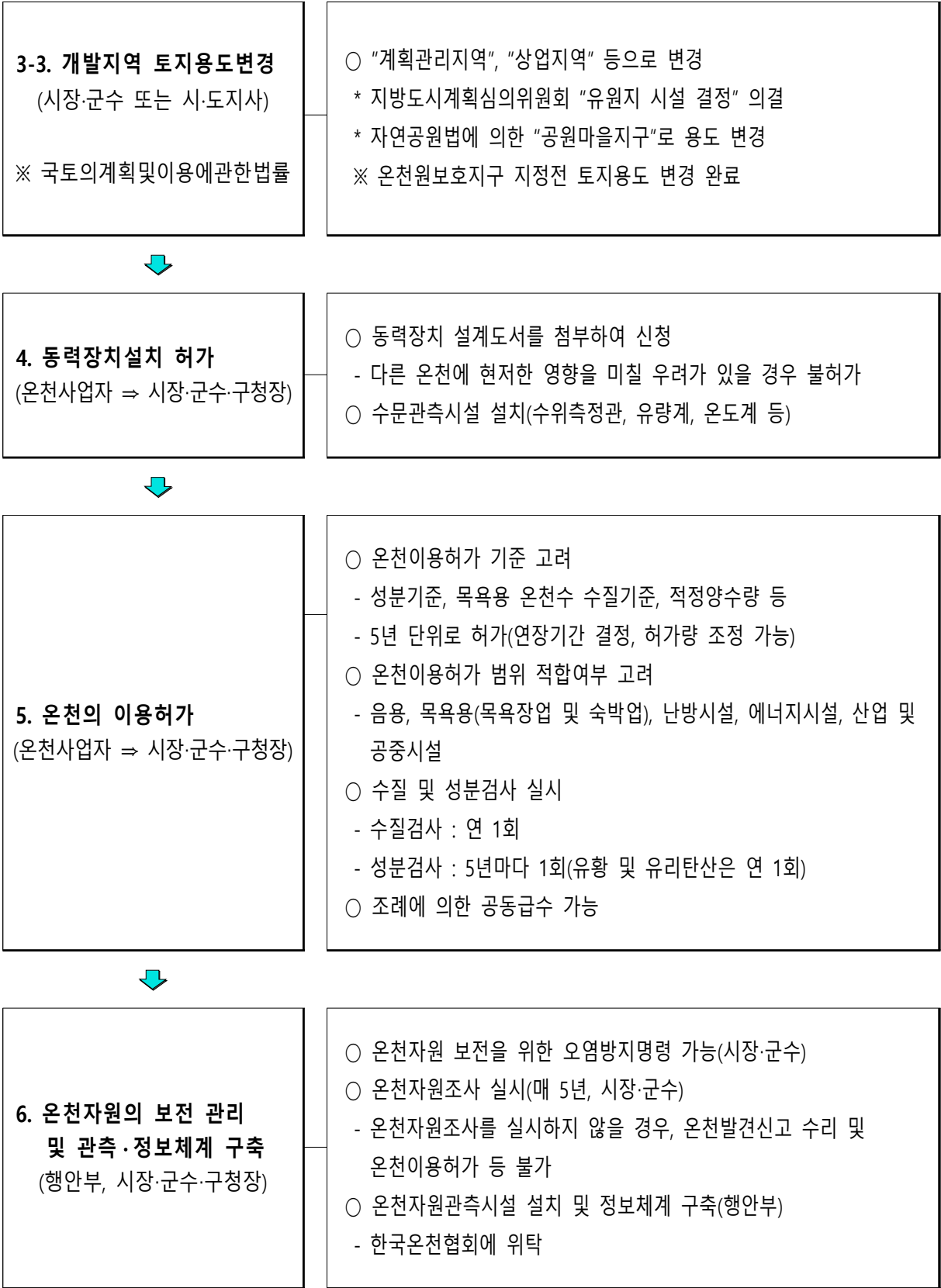
**6. 온천자원의 보전 관리 및  
관측·정보체계 구축**  
(행안부, 시장·군수·구청장)

- 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 제25조(출입검사 등)
- 영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 규칙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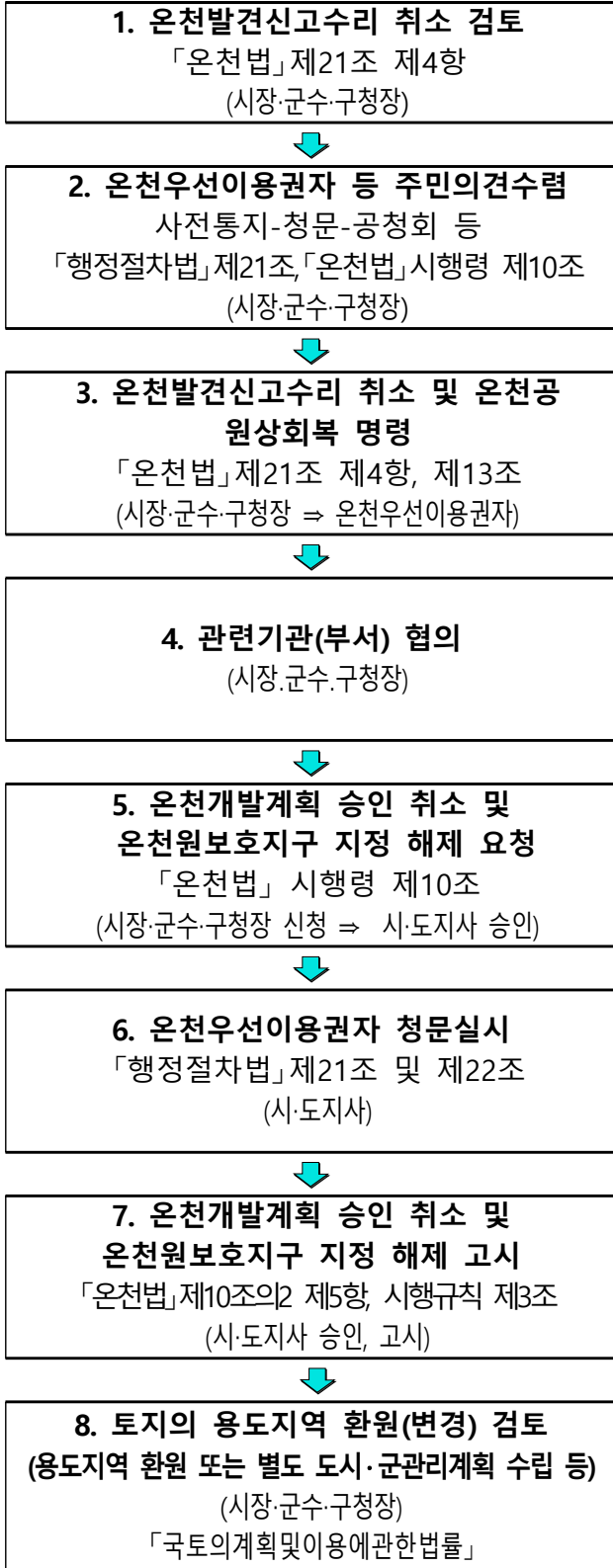
## 1-2. 온천개발 절차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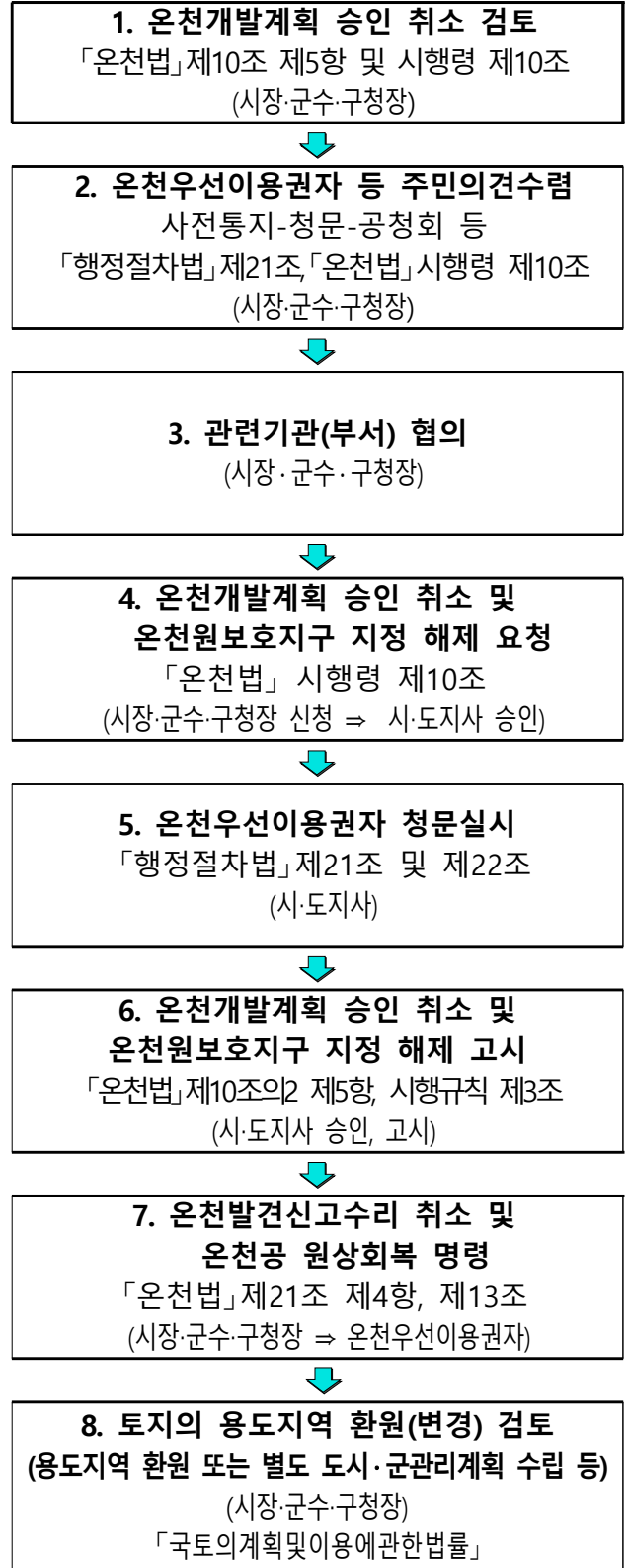


### 1-3.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온천원보호지구 지정 해제) 절차

〈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사유 해당 〉  
-「온천법」제21조 제4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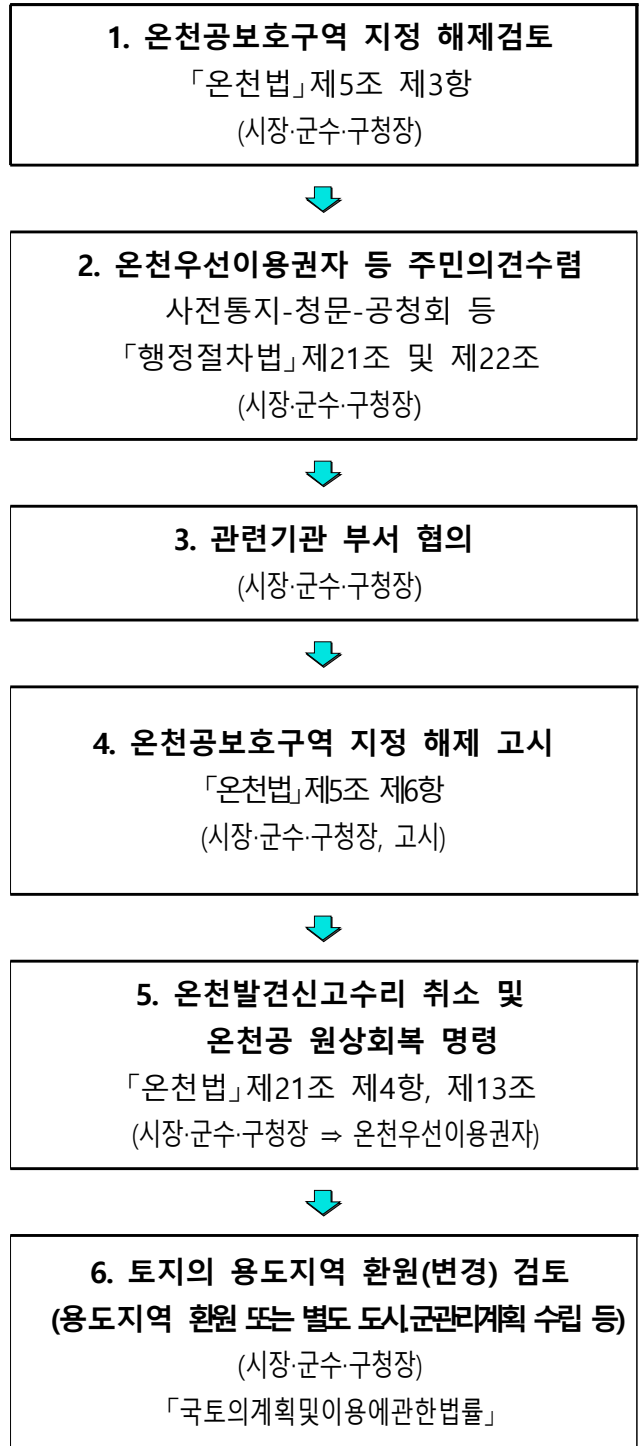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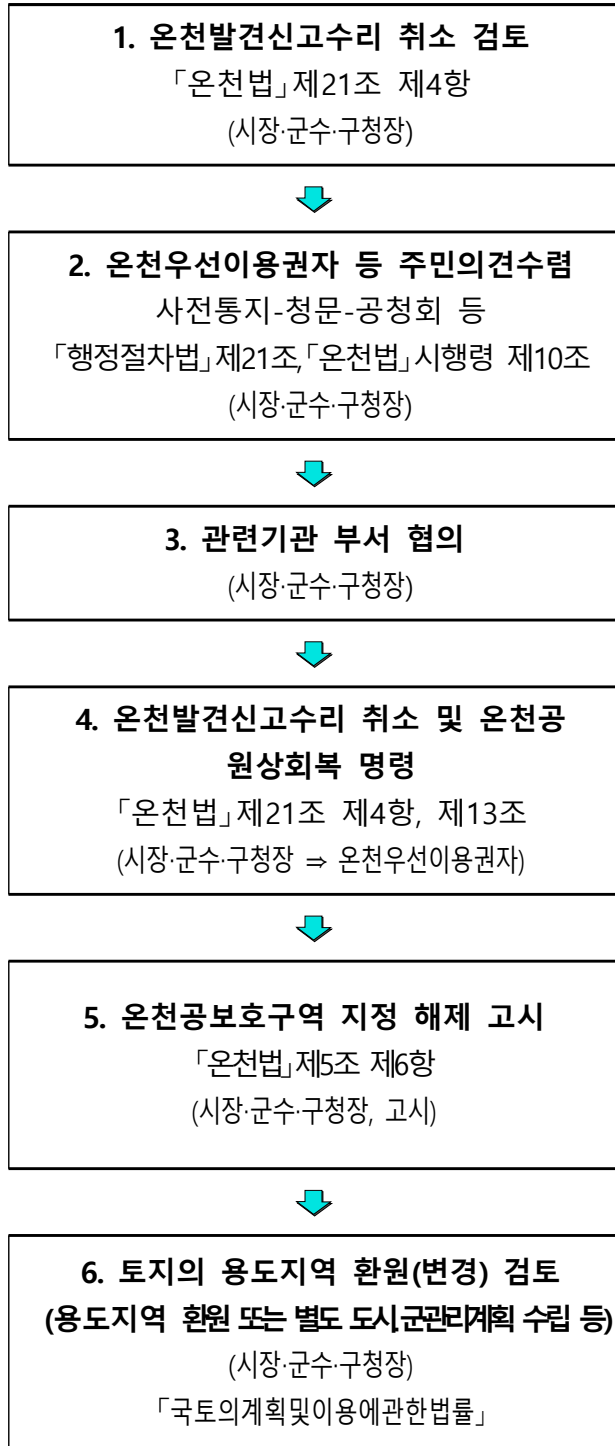
〈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사유 해당 〉  
-「온천법」제10조 제5항 -



## 1-4. 온천보호구역 지정 해제 절차

〈 온천발견신고수리 취소사유 해당 〉  
- 「온천법」 제21조 제4항 -

〈 온천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해당 〉  
- 「온천법」 제5조 제3항 -



## 2-1. 굴착허가

### ▶ 개요

-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허가 필요

### ▶ 굴착허가 절차와 요건

-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
-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
- 굴착허가 신청 서류(시장·군수에게 제출)
  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
  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
  4.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 \* 증굴의 경우 : 굴착사용 동의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온천자원부존조사 결과보고서 미첨부 가능
    - \* 보조공의 경우 : 온천자원부존조사 결과보고서 미첨부 가능
-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
  - \* 시장·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굴착신고서 접수시 정보이용 동의를 받고, 부동의시 소유권 증명서류 첨부)

## ▶ 굴착 불허가 조건

1. 허가를 신청한 자가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2.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 증굴, 보조공을 위한 굴착일 경우에는 제외
4.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온천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보조공 굴착]** 기존 온천공과 1km 이내 굴착 허용(법 제12조), 온천개발계획 적정양수량 산정시 필요(시행령 제6조), 온천우선 이용권자에게 우선적 허용(법 제23조)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 판단]** 기존 온천공과 굴착예정지 위치를 기준으로 판단

**[대체공 굴착]** 기존 온천공을 폐공하고 대체공으로 신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공에 대하여는 굴착허가 허용, 종전의 허가량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가량 적정 조치

## ▶ 굴착허가 기간

-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
  -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 가능
-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함

## ▶ 굴착신고

-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온천 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함
- 굴착신고 서류
  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
  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
  4.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
  - \* 시장·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
-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 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 기재

**[판례]**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고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시설은 온천공이 아니라 지하수공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서 용출되는 물이 온천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지하수법 제15조에 의하여 시설 및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것은 가능(부산지법 2008구합3211 판결 참조)

## 2-2. 이행보증금의 예치

### ▶ 이행보증금의 예치 대상

1.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3.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
4. 온천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지하수개발허가를 받으려는 자(근거: 지하수법 제14조제1항)
  -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제외

## ▶ 이행보증금의 납부

-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
- 보증서·유가증권 종류
  1. 다음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2.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
  4. 금융회사나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
  5.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 ▶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

1. 굴착허가의 경우 : 굴착허가일로부터 허가 종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2.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3.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로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온천발견신고 수리일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1년이상으로 설정)



4. 지하수개발허가의 경우 : 지하수개발허가일부터 허가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근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원칙적으로 반환하여야 함(다만,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음. 지하수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2조 참조)

\* 시장·군수가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

### ▶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1.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

\*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음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22호) 참조]

## 2-3. 토지의 원상회복

### ▶ 원상회복 사유

1.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2.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

3.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 ▶ 원상회복 절차 및 방법

-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음
-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

## ▶ 원상회복 관련 온천법 개정사항('21. 6월 시행 예정)

- (과태료 강화) 온천 굴착허가 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으로 과태료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 상향(2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 (절차 구체화) 대집행 절차, 원상회복 예외근거 명시

**[판례]** 「온천법」 제13조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자의 원상회복 절차와 방법에 대해 온천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의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온천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 자의 범위를 오로지 「온천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 한정하거나, 「지하수법」 등 다른 법령에서 온천의 개발과 관련하여 원상복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바, 온천지구 외에서 온천 굴착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굴착한 자는 「지하수법」 제15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여 원상회복이 가능함(부산지법 2008구합3211 참조)

**[원상회복의 예외]** 시장·군수는 지하수법 제15조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온천자원관측장비 설치 등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 2-4.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 ▶ 개요

-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음
  - 다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가능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하수 개발 범위
  1. 공공시설의 업무용
  2. 농업용수 공급용
  3.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냉탕, 샤워시설 등)
  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

**[상수도 이용]**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온천지구(구역)내 음식점 등 소규모 영업장의 지하수 이용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상수도 이용 조치**

### 【 온천원보호지구(구역)내 지하수 개발 관련 】

- 온천원보호지구(구역)내에서 지하수(섭씨 25도 미만의 물)개발의 경우는 온천법시행령 제16조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되,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영업용의 경우는 개발허가 제한
- ※ 온천법에 의하여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동 지구의 지정을 위한 절차이행중에 있고 신고수리된 지역에서 온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이용권 등을 확보하고 있는 정당한 개발자가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온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 조치
- 또한, 온천원보호지구(구역)내에서 지하수를 개발(온천법 시행령 제16조)하여 목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는 공중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 및 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지하수개발 허가일로부터 1년마다(기간종료 30일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기 바람
- ※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내에서 지하수개발허가시 위의 사항을 이행조건으로 허가 조치

### 【 2010년 지하수개발허가 대상 확대 취지 】

- ①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온천시설 외의 용도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공공시설이나 농업용수로 제한되어 있어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 ② 영세사업자 등이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함
- ③ 따라서, 온천원보호지구 내에서 소규모 지하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편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지하수 담당부서와의 정보 공유 】

- 시장·군수는 온천법에 따른 온천, 지하수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지하수 담당부서에 정보 제공 필요

### ▶ 온천보호명령

-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함

### 【 온천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 】

- 굴착행위의 금지조치 및 원상회복 명령
- 굴착행위의 심도 등의 제한
- 기타 온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저지·제한하는 행위 등
- \* 토지굴착으로 온천원에 미치는 요인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조사 필요

**[판례]** 「온천법」 제9조(온천을 용출시킬 목적 이외의 토지 굴착자에 대한 조치)는 온천지구 안에서 온천을 용출시킬 이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한 경우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굴착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온천수 아닌 지하수개발을 위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정호(관정)를 굴착한 경우에는 설사 지하수의 수온이 섭씨 23도에 불과하여 온천법의 적용을 받는 온천수에 타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호(관정)복구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78 판결)

### 3-1. 온천발견 신고 및 수리

#### ▶ 개요

- 온천원보호지구(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온천발견신고 서류

-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이 적힌 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
  2. 발견경위
  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
  4. 발견지역의 여건
-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보조공의 온천발견신고]** 보조공의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 및 수리의 필요가 없음

## 〈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1. 온천공 검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 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 ▶ 온천발견신고 수리 절차

- 시장·군수는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판단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해야 함(처리기간 : 10일)
-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함
- 시장·군수는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개 이상의 온천발견 신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온천공

검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온천 개발·이용의 가치판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 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지체없이 반려해야 함

-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온천 개발·이용의 가치판단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검사한 후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함
-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 보호지구(구역)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해야 함

**【 온천공검사기관 선정 및 현장검사 입회 절차 】**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서류 접수시 온천공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발견을 위한 시추굴착을 하지 아니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인지 확인
  - ※ 온천공검사를 실시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을 온천부존조사기관과 달리하여 온천공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온천공 검사시에는 시·군·구 관계공무원이 현지 입회하여 온천수 시료 봉인 및 양수온도 확인
- 최초 온천발견 신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온천공 검사인 경우,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온천협회 관계자) 입회하여 검사하여야 함
  - ※ 최초 온천공검사를 시행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은 검사실시일자, 검사인력, 검사 일정(시간단위)을 검사일 15일전까지 온천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 판단기준**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성분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 ※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
- 가. 1일 적정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함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 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온천발견신고자의 토지 소유]** 온천발견신고자는 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원칙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함(온천발견신고수리시까지 발견신고공 및 인근에 개발할 수 있는 토지 소유여부 검토)

#### 【 온천공 영향조사 판단기준 】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온천공영향조사 결과에 의해 판단
- 인근 온천공·지하수공과의 수위 영향정도가 2%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수리 불가, 원상회복 실시(다만, 동일인 소유인 경우에는 제외)
- ※ 온천공 영향조사의 범위는 수평거리 300m이내가 적정하며,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판단

#### 【 온천공 영향조사 비용부담 권고 】

- 수평거리 300m 이내 : 신규 온천공소유자 100%부담
- 수평거리 300~600m이내 : 신규 온천공소유자와 민원인 각 50%부담
- 수평거리 600m 이상 : 민원인 100%부담

#### 【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지역에서 금지사항 】

- 제3자의 온천수 및 지하수개발을 위한 토지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 발견신고자 이외의 자에 대한 온천발견신고 접수
- 온천우선이용권자 이외의 온천일시이용허가
-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역의 일원에서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목욕장 등 온천이용시설의 신축

### 【 온천신고수리 관련 행정처리 】

-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원보호지구(구역 포함)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지역내에서 온천이용시설(목욕장, 숙박시설 등) 신축허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온천담당부서와 협의 처리토록 함

**[판례]** 구 「온천법」 제4조 제5항의 취지 및 그 조항에 따라 복수의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금지되는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이란 새로운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함으로써 인하여 기존의 인근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에 실질적 장애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한정된다. 나아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등에 의하여 그 상호관계와 영향 등이 객관적·구체적으로 증명된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20734 판결 참조)

**[판례]** 자분공인 참가인의 온천공이 1일 적정양수량으로 자분함에 의해 원고의 1, 2, 3호공에서 감소하는 수량의 합은 1일 50.8m<sup>3</sup>로 원고의 1, 2, 3호공 전체 1일 적정양수량의 1.28%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온천공이 원고의 온천공에 대해 미치는 영향은 구 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신고불수리 사유가 될 정도의 것이라 할 수 없고, 나아가 참가인의 온천공이 원고의 온천공과 같은 온천원을 가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23941 판결)

## 3-2. 온천발견신고 수리 제한 및 취소

### ▶ 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음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함

## ▶ 온천발견신고의 반려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함
  1. 온천발견신고자가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온천발견신고자가 온천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 ▶ 온천발견신고의 취소

-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함
  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되지 아니한 경우
    - \*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 가능
  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

**[주민의견 수렴]** 온천발견신고의 취소시에는 행정절차법 규정 준수(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온천개발계획 취소와의 연계]** 온천개발계획 미승인 등에 의한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에 따라 온천 개발·이용할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 취소(온천원보호지구 해제) 및 온천공 보호구역 해제 가능

**【법령해석】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관련(법제처 해석 16-0565)**

**[질의요지]**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서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제1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제2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함. 이하 같음)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지?

**[회 답]** 2010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되고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었으나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현행 「온천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별도의 지정 해제 절차 없이 해당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4-1.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 개요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소규모 온천개발(30,000㎡미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음(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필요)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봄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 필요

#### ▶ 온천공보호구역 신청 서류

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적정양수량 포함)
  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
  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
  5.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
- \* 시·도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서] 온천발견신고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보고서 등 활용

####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고려사항

1. 적정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 인지 여부
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사항**(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관련)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양수량(보조공의 경우 150톤 이상)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기준**

- 온천공의 1일 적정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음의 지역에 지정
  - 도시·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 온천공보호구역의 개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함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 이행 필요
-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6개월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함

## ▶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신청 서류 첨부하여 특별자치 시장·도지사에게 제출

##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 절차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미리 고시 필요
- 고시 기재사항 :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지형도면
-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함
- 지정 고시의 경우에는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
-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
-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고시내용]**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을 고시에 포함(관광진흥법 제54조 참조)

**[지역·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시 주민 의견청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청취 절차 준수

**[개발계획 변경시 시·도지사 승인 생략이 가능한 경우]**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상기 사항이 변경되면 그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전체 면적의 10%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 가능(영 제9조제5항 준용)

**[토지용도 환원조치 검토]** 온천공보호구역이나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해제 또는 면적 축소의 경우,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로 변경한 토지 용도에 대한 환원 조치 검토 필요(국토계획법 등 참조)

## ▶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한 지하수법 적용 배제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7조의3(지하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지하수 개발·이용의신고), 제8조의2(신고의 효력 상실), 제9조(준공신고),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부터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지원으로 이용 등)까지,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제20조(수질검사 등) 및 제21조(출입조사 등)

**[지하수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하수의 조사,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지하수법」 제14조(이행보증금의 예치),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6조(지하수 오염 방지명령 등)

## 4-2.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 ▶ 온천공보호구역의 해제

-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음
  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온천전문검사의 검사 필요)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 가능(제4호의 경우)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천 현황(온도, 양수량), 환경 피해, 주변 온천 및 지하수 영향, 기존 개발계획의 주변 여건 및 수요 전망(주변 온천이용시설 신설, 지가 상승 등), 토지소유권 확보 수준, 당초 개발기간 초과, 10년이상 개발 미완료,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등에 따른 사업적정성을 검토하여 판단(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참조)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온천법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사업 인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 전체 토지소유권 확보, 건축물 미착공 등을 고려하여 판단

### 5-1.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승인

#### ▶ 개요

-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30,000m<sup>2</sup>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제외)
-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가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 신청)
- 해당 지역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합리적인 조정 등 검토)
-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가능

#### ▶ 온천개발계획 포함사항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온천개발계획 신청 자료(시장·군수 → 시·도지사)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 첨부)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 시·도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

## ▶ 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발견신고 수리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승인 신청서에 각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음
- \* 시·도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
- 시·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 \*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미포함
- 시·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가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안 됨

## ▶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고려사항

1. 온천공의 1일 적정양수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인근 지자체 의견수렴] 인접한 시·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해당 인근 지자체에 대한 의견수렴 필요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승인의 신속한 이행 】**

○ 온천개발면적에 대한 토지용도의 변경

- 온천발견신고수리된 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 산정을 위한 온천굴착허가 우선 조치
- 온천양수량을 감안하여 온천개발면적을 확정된 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토지용도 변경 완료 조치

○ 온천개발계획의 신속한 승인 신청 및 승인 조치

- 당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
- ※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온천으로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발견신고를 수리한 만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원칙
- 온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신청자료의 미흡 등으로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토록 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온천개발계획 내용이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 처리방법 】**

- 온천개발계획 수립권자(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승인신청한 온천개발계획에 대해 시·도지사의 계획내용의 검토결과 불승인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 중 미비되는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보완 요구 또는 불승인 처리

**【 2010년 이전 지정된 온천지구의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승인 방법 】**

- 2010년 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 절차 (법제처 해석 16-0444, 참고 : 2010년 개정된 온천법 부칙 제4조)

### 【 온천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성격 】

- 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의 시행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 허가 여부는 사업장소의 현상과 위치 및 주위의 상황, 사업시행의 시기 및 주체의 적정성, 사업계획에 나타난 사업의 내용, 규모, 방법과 그것이 자연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일종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
- 위와 같은 재량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당해 행위가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는 것이나, 법원의 심사결과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사실오인 등에 근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취소를 면치 못한다 할 것(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589 판결)

####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사항(온천개발계획의 수립 관련)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양수량(보조공의 경우 150톤 이상)
  - \*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 온천개발면적( $m^2$ )= $66.2 \times$ 일일적정양수량(톤)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음

**[개발면적 산정]** 온천이용객 1인당 개발기준면적은  $16.55m^2$ , 온천이용객 1인당 온천수 사용 기준량은 0.25톤(250ℓ)

**[온천개발면적 고려사항]** 토지소유권·사용권 확보 현황을 고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 참조)

## ▶ 온천개발자문위원회

-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 환경영향평가

-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
  - 온천개발면적이 300,000㎡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
  - 온천개발면적이 300,000㎡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 5-2. 온천개발계획의 변경

### ▶ 개요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개발계획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특별자치시장·도지사 제외, “경미한 사항” 제외)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개발계획 포함사항(법 제10조 제2항)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개발계획 포함사항(법 제10조제2항)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신청 가능
-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 변경(변경승인)시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필요
- 시·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특별자치시장 및 도지사는 온천개발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 다만, 온천개발계획 포함사항(법 제10조제2항)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함

#### ▶ 온천개발계획 변경 사유

1. 온천개발계획 포함사항(법 제10조제2항) 사항이 변경된 경우(강행 규정)
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
3. 온천공의 1일 적정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도지사 승인 제외 :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 온천개발면적 또는 시설의 증감시 적용례 】

- 온천원보호지구 면적의 증감없이 온천이용시설, 온천의 채수·이용계획, 부대시설 증감 등 단순한 온천개발계획 변경필요시 "10%범위 안에서"의 적용(영 제9조제5항)은 온천개발계획 중 온천수 이용허가량 등을 감안한 전체시설면적의 10%를 고려하여 판단

▶ 온천개발계획 변경신청 자료(시장군수, 온천우선이용권자 → 시도지사)

1. 지리적 여건
  2.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 포함,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 첨부)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 \* 시·도지사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

### 5-3. 온천개발계획의 취소

▶ 온천개발계획 취소 및 승인 취소(시·도지사)

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온천전문검사기관 검사 필요)
  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
  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 가능(제4호의 경우)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온천 현황(온도, 양수량), 환경 피해, 주변 온천 및 지하수 영향, 기존 개발계획의 주변 여건 및 수요 전망(주변 온천이용시설 신설, 지가 상승 등), 토지소유권 확보 수준, 당초 개발기간, 10년이상 개발 미완료, 개발 면적(온천법 시행규칙 제6조),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등 사업적정성을 검토하여 판단(온천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참조)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온천법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 실시계획 인가, 전체 토지소유권 확보, 건축물 미착공 등을 고려하여 판단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사유]** 과거 온천원보호지구(‘10.8월 이전 지정)는 온천법 제10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온천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 해제 가능 (법제처 해석사례 16-0565 참조)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자문]** 온천개발계획 취소, 온천공보호구역 해제, 온천발견신고 취소 등의 경우에는 필요시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

#### ▶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 시장·군수는 또는 구청장은 온천개발계획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온천원이 고갈된 경우에 한정)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 가능
- 시·도지사는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에 따른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 가능

### 5-4. 온천개발계획 인·허가 의제

#### ▶ 개요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사항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 \* 특별자치시장·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에 해당
-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련 인·허가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봄

#### ▶ 온천개발계획 인·허가 의제 대상

1. 「건축법」 :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가설 건축물의 허가·신고, 건축 및 대수선의 협의

2. 「골재채취법」 : 골재채취의 허가
3. 「국유재산법」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일부시설 등), 지형도면의 승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점용·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신고, 매립면허, 매립의 협의·승인 및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 「관광진흥법」 : 사업계획 승인, 조건부 영업허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7. 「광업법」 : 불허가처분 및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8. 「농어촌정비법」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 농지전용허가
10. 「도로법」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및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사도법」 : 사도개설의 허가
12. 「사방사업법」 :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 산림보호구역 행위의 허가, 구역의 지정해제
14. 「산지관리법」 :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 소하천등 정비허가 및 소하천등의 점용허가
16. 「수도법」 :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자연공원법」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 및 행위허가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분묘의 개장허가
20. 「전기사업법」 :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주택법」 : 사업계획의 승인
22. 「집단에너지사업법」 :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3. 「초지법」 : 초지전용의 허가
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기본측량성과 등의 사용  
심사 및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
26.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8. 「하수도법」 :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점용허가
29. 「하천법」 :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하천공사 등의 허가, 실시  
계획의 인가 및 하천점용의 허가

#### ▶ 온천개발계획 인·허가 의제 절차

-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인허가 의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 \*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법령해석】 온천개발계획 승인 취소 이후(법제처 해석 14-0141)**

**[질의요지]**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 이하 같음]의 결정이 의제된 후,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 효력을 잃는지, 아니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한지?

**[회 답]** 시·도지사가 「온천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한 경우, 같은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의제된 해당 도시·군관리계획[이 사안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공간시설(유원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의 결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해제결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 5-5.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 ▶ 개요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 시·도지사가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고시 필요
- \*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봄

**[판례]** 온천법상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해제 등의 처분은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효율적인 시설 배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다른 지역 개발 계획과의 관련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여부 및 보호지구의 면적 등을 결정하도록 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춘천지방법원 2009. 10. 29. 선고 2007구합632 판결 참조)

**[온천원보호지구 면적]** 온천원보호지구는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 온천개발면적, 부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고시**

-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 고시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함
- 지정고시 사항
  1.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
  2.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3.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
- 시·도지사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함
-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

**[고시 내용]** 온천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을 고시에 포함(관광진흥법 제54조 참조)

**[주민의견 청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주민청취 절차 준수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효과 】**

- 온천원의 효율적 보호 및 관리
- 온천개발의 촉진을 위한 토지용도의 변경 및 계획적인 개발
  - 온천원보호지구지정 이전에 토지용도 변경 완료 필요(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공원마을지구 등)
  -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계획적인 개발 추진

**【 온천개발계획에 의한 온천지구 운영 】**

- 온천원보호지구안에서는 온천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목욕장 등 온천이용 시설은 원칙적으로 금지

**【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간 변경】**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이후 개발 지연 등으로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천 법령에 규정한 절차를 거쳐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온천원보호지구는 동시해제)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이후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가능(온천공보호구역은 동시해제)

## ▶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해 지하수법 적용 배제

-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7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제8조(지하수개발이용의신고), 제8조의2(신고의효력상실), 제9조(준공신고),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부터 제9조의7(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 등)까지,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 등), 제20조(수질검사 등) 및 제21조(출입조사 등)

### 【법령해석】 온천개발계획 승인 적용 법률(법제처 해석 16-0444)

**[질의요지]**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한 후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도록 온천개발절차를 진행하였으나,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된 「온천법」(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에서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온천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할 때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도록 변경되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회 답]**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한 온천개발계획을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된 이후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한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유]**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종전의 규정”이란 위와 같이 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제4조)과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안과 같이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지정된 온천원보호지구에 대하여 온천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인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05호로 일부개정되기 직전의 「온천법」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제10조)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한 규정 외에 다른 규정에 대해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온천개발계획 승인 부칙 적용(법제처 해석 10-0199)**

**[질의요지]** 구 「온천법」(1995. 12. 30. 법률 제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라 함)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과 굴착허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 「온천법」(법률 제10005호, 2010. 2. 4. 공포, 8. 5. 시행되는 것을 말함. 이하 “2010년 개정 「온천법」”이라 함) 부칙 제4조의 해석상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지?

**[회 답]**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에 따라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 내에서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상 온천발견 신고자가 온천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에 있어서 적용되는 규정은,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10년 개정 「온천법」이 시행되기 전에 유효하게 적용되던 규정으로서 2010년 개정 「온천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2006년 전부개정 「온천법」(법률 제7856호, 2006. 3. 3. 전부개정, 7. 1. 시행)과 그 이후 일부 개정된 규정이라 할 것이지, 해당 온천지구의 지정 당시 시행되던 1995년 개정 전 「온천법」이 되는 것은 아니며, 굴착허가는 2010년 개정 「온천법」 부칙 제4조 경과조치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5-6. 온천개발사업의 시행

### ▶ 개요

- 시장·군수는 온천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 및 다음의 물건·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물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
- 농업 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 필요

-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봄
-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시장·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 가능

### ▶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
- 온천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

## 6.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 ▶ 개요

-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
-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서면통지)
-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동력장치를 설치할 때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

**[동력장치 설치 허가의 제한]**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력장치 설치 허가 제한 가능(1일 적정양수량의 20%이상 영향)



## ▶ 수문관측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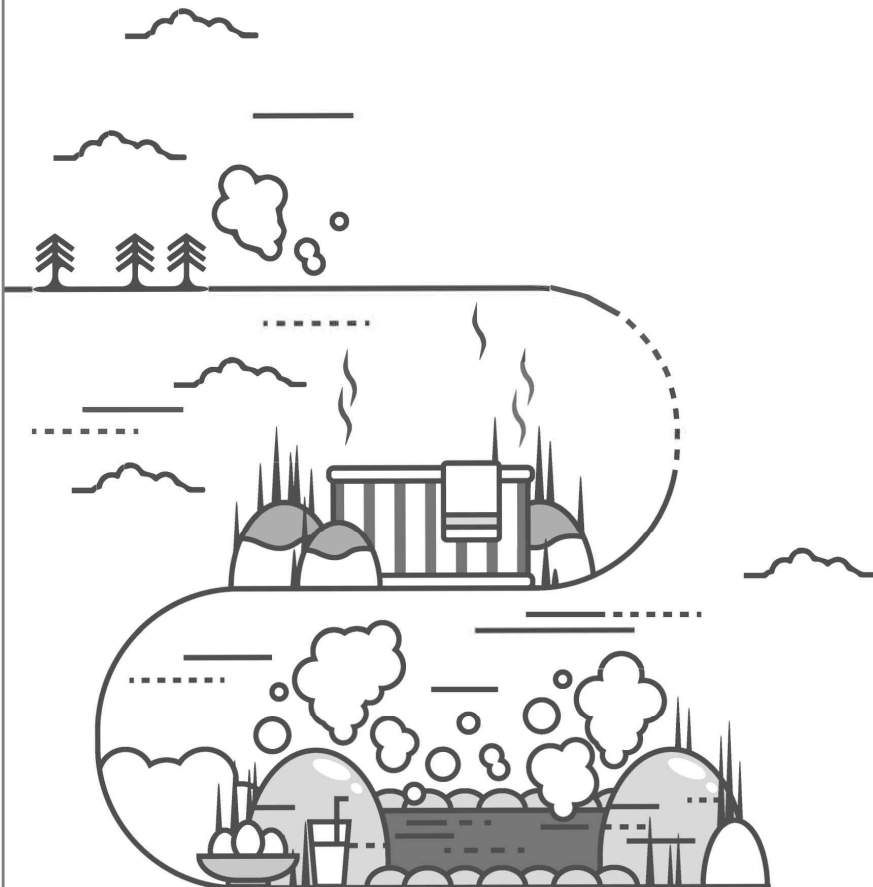
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mm 이상인 내열·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
2. 유량계
3. 온도계
  - \* 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함

**[온천공 검사를 위한 수중펌프 설치]** 동력장치 설치 허가는 온천 채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온천공검사를 위한 수중펌프 설치는 동력장치 설치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 관리

1. 온천의 이용허가
2. 온천의 보전·관리





# Ⅲ 온천의 이용 및 보전 관리

## 1 온천의 이용허가

### 1-1. 온천이용허가

#### ▶ 개요

-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은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구역)에서 원칙적으로 이용허가,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 ▶ 온천이용허가 신청

-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
  - \*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
- 온천이용허가 신청 서류
  1. 온천이용계획서
  2.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
  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 포함)
  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
  - \* 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 온천이용허가 범위

-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
-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다음의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온천개발계획에 의함)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
  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
  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
  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 ▶ 온천이용허가 제외 사유

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2.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 다만, 온천개발계획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구역)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음
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가. 온천의 성분기준
  - 나.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

4.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온천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온천이용허가 대상]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온천공 소유자 등 정당한 권리자에게 온천이용허가를 할 수 있음**

**【법령해석】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이용허가(법제처 해석 17-0136)**

**[질의요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온천 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회 답]** 시장·군수가 온천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하려면 개발계획에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의 온천 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온천이용허가 고려사항**

-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 연장할 경우 시장·군수는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함
- 온천이용허가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

**[주간·월간 단위의 온천이용허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자원관측시스템 설치·운영, 수량초과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 등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의 1일 적정양수량을 토대로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온천이용허가할 수 있음

## 온천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온천표시: 짙은 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Cyan 100%)</li><li>2. 글씨: 파란색(Cyan 100%)</li></ol> <p>※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온천, 溫泉, HOT SPRING으로 단독 또는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업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p>
---	---

## 허가증의 교부

- 시장·군수이 허가를 한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해야 함
  1. 굴착허가
  2.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3. 온천의 이용허가

## 온천이용허가 인·허가 의제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함
  -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봄

**[소유권 이전에 따른 온천이용허가 방법]** 온천이용허가기간 중 온천이용시설 소유권 등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온천이용허가를 새로이 받아야 함

- \* 기존 온천이용허가에 대한 정기온천자원조사 기간이 남아 있다면, 남은 자원조사 기간과 허가기간을 일치시키는 경우 정기 온천자원조사 생략 가능

**[판례]** 자연히 용출하는 지하수나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한 가정용 우물 또는 공동우물 및 기타 경미한 개발·이용 등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지하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에 부수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의 공적 수자원으로서의 성질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행정청의 허가·감시·감독·이용제한·공동이용 명령·허가취소 등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규제의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 개발·이용권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후 그 토지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여 허가에 의한 지하수 개발·이용권이 새로운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7470 판결 참조)

**【 온천이용허가와 온천자원관리 】**

- 온천 이용허가시 온천이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온천전문검사기관이 검사한 적정양수량의 범위내에서 허가 조치
- 온천이용허가시 반드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적정양수량을 확인하고 온천이용허가 연장시 온천자원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 및 허가량을 결정
- 온천별 온천사용량에 대하여 반드시 공별 1일 결산을 하도록 지도하고 온천이용허가 받은 자가 사용한 온천이용량을 월단위로 제출받아 과다사용 등을 확인
- ※ 온천수를 이용허가량보다 과다 사용한 경우,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온천'을 이용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법 제32조 및 제33조)

### 【 온천수 공급 배관 관리 】

- 온천이용을 받은 자는 온천수에 지하수를 섞어 사용하면 안되며, 위반시 온천이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게 됨
- 온천수 공급을 위한 배관 파이프라인을 구분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 온천이용시설 신규설치시 온천수 배관라인에는 빨강색, 지하수 배관라인에는 파랑색으로 표시(테이프 피복가능)
  - 기존 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온천수 또는 지하수 공급관로를 따라 2~3미터 간격으로 5cm내외의 테이프로 표시

[온천이용계획서 서식(온천법 시행규칙 제10조)]

### 온천이용계획서

#### 1. 이용목적

- 양질의 온천수를 이용하여 이용객들에게 공급함으로써 이용객의 건강증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함

#### 2. 이용계획 개요

- 가. 이용신청자
- 나. 이용업소명
- 다. 이용기간
- 라. 이용허가신청량(1일)
- 마. 이용구분 ※ 이용은 목욕용, 음용, 산업용, 난방용으로 구분

#### 3. 이용온천공 현황

- 가. 이용온천공 수
- 나. 온천공 소재지
- 다. 온천공 소유자(토지등기부상의 소유자)
- 라. 온천공 검사기관
- 마. 온천공 검사기간
- 바. 1일 적정양수량

#### 4. 이용시설 현황

- 가. 이용시설현황(건축일자, 면적, 규모, 구조 등)
- 나. 이용시설별 온천공급계획
- 다. 동시수용능력(1일)
- 라. 온천이용 예상인원(1일) ※ 온천수사용량은 1인 250ℓ기준

#### 5. 온천이용시설 도면 및 배관도(개략도)

## ▶ 일시이용허가

- 시장·군수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온천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 필요)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함
- 일시 온천이용허가 요건
  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
  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일시 온천이용허가 양수량
  -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음

[온천 일시이용허가 기간의 제한] 온천 일시이용허가는 2년의 범위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1년의 범위내에서 1회 추가 연장 가능함(일시이용허가기간이 3년이 경과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허가 금지)

※ 온천법 제21조제4항제3호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신청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 수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천 일시이용허가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온천관련 허가시 금지사항 】

- 온천굴착허가, 동력장치 설치허가, 온천이용허가 등 온천관련 허가시 개인재산에 대하여 기부채납은 원칙적으로 금지

**【법령해석】 온천일시이용허가 양도(법제처 해석 08-0437)**

**[질의요지]** 구 「온천법 시행령」(2001. 6. 22. 대통령령 제172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허가(이하 “일시온천이용허가”라 함)를 받은 자가 「온천법」(2006. 3. 3. 법률 제7856호로 전부개정되어 2006. 7. 1.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도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회 답]** 구 「온천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법」이 시행된 후에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 온천이용시설, 목욕장업 등을 모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의 일시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온천이용시설 등의 양도에 수반하여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 유]**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일시온천이용허가는 온천발견자가 온천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해당 토지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또는 지정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혼합적 허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혼합적 허가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허가받은 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한 허가와 관련된 제반 시설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고 하여도 당연히 그 허가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2. 26. 2001다53622 판결), 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일시온천이용허가도 양수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 1-2.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 ▶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 시장·군수는 다음의 경우 온천이용허가를 취소·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시설관리자)에게 보건상·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1.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위생상 위해가 있다고 인정
2.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 난방용 제외)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

### ▶ 온천과 관련한 금지사항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음
-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함
-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름

#### 【 허위광고의 예 】

- 온천성분 함량을 과다 표기하는 경우(유황, 탄산 등)
-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에 온천표시를 사용하거나, 도로명 주소 및 간판 등에 온천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보양온천으로 승인받지 않고 보양온천표시 사용 등

#### 【 법령해석 】 온천업종 오인 언어 사용(법제처 해석 06-0344)

**[질의요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답]**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파(Spa)라는 외래어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온천법」 제1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1-3. 온천의 공동급수

#### ▶ 온천의 공동급수

-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음

-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 】

-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 수립시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온천공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2 온천의 보전·관리

### 2-1.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 ▶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법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 온천목욕장의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

##### 1. 욕수의 수질기준

가. 원수 :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욕조수(浴槽水)

- 1)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3)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2. 수질검사방법

-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 나. 욕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 다.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한번 채취된 시료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시료 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하여야 한다.
- 라.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취하고 봉인해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 마.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표준화된 검사방법에 따른다.
- 바.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적합한 검사 도구를 이용해 그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 2-2.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 개요

- 온천종사자(산업용, 난방용 제외)는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함

-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일부는 1년)
- 시장·군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 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수질·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 시장·군수는 검사대상자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해야 함
- 검사대상자는 검사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 \*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음
-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 가능

〈 수질·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 검사	시장·군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온천협회에 위탁 가능)	연 1회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 음용적합여부 포함)
성분 검사	온천전문검사기관 (시장·군수는 온천협회에 위탁 가능)	5년마다 1회 (유황성분(total S-2 성분함량), 유리탄산(free CO <sub>2</sub> ) 성분은 연 1회 이상)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 수질·성분검사 검사항목 】

- 수질검사 : 총대장균군, 레지오넬라균, 유리잔류염소농도
  - \* 필요시 질산성질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포함
- 성분검사 : 수소이온농도, 이온성분(Na, Ca, Mg, K, Cl, SO<sub>4</sub>, HCO<sub>3</sub>, CO<sub>3</sub>, total S-2, free CO<sub>2</sub>, SiO<sub>2</sub>, Fe, Cu 등) 등

**[성분검사와 정기자원조사 연계]** 성분검사기간과 정기자원조사기간이 동일년도인 경우 성분검사를 연기하여 정기자원조사와 동시 수행 가능

(예) 성분검사는 2020.1.5., 정기자원조사는 2020.8.5.인 경우 성분검사를 2020.8.5.에 같이 실시할 수 있음(자동연장으로 행정처리)

**[지역온천 효능 연구]** 시장·군수는 온천정기자원조사 등을 통한 **지역온천의 이용효과** 등에 대한 분석 필요

## 2-3. 온천자원의 조사 및 관측

### ▶ 온천자원조사

-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 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
  - \*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
- 시장·군수가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음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조사를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온천자원 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온천자원조사 방법]** 온천원보호지구(구역)내 모든 공을 동일기간내에 조사함을 원칙 (이용허가기간을 온천자원조사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

### 【 온천자원관리 철저 】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온천이용시설에 공급되는 온천수에 대하여 약품, 한약재 등 이물질(또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첨가물)을 첨가할 경우에 그 내용을 반드시 게시한 후 사용
- 시장·군수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청결한 온천수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이물질 첨가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여 온천성분의 임의조작 및 온천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공보호지구(구역)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우수온천에 우선적으로 설치 필요)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온천자원 관측사무를 온천협회에 위탁(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자원 관측시설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정보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 온천정보의 일반인 제공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자원 관측 기록 및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 시장·군수는 다음 자료를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1.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
  2. 온천관리대장

## 2-4. 오염방지명령 및 출입검사

### ▶ 오염방지명령

-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판례] 온천수를 사용하는 여관 또는 목욕탕에서 계량기가 달린 양수기를 설치 사용하라는 시설개선명령은 온천수의 효율적인 수급으로 온천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온천법 제15조(이용시설등의 개선명령)가 정하는 온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명령이라 할 것(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도2489 판결)

### ▶ 출입검사

-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음
  1. 온천의 온도
  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
  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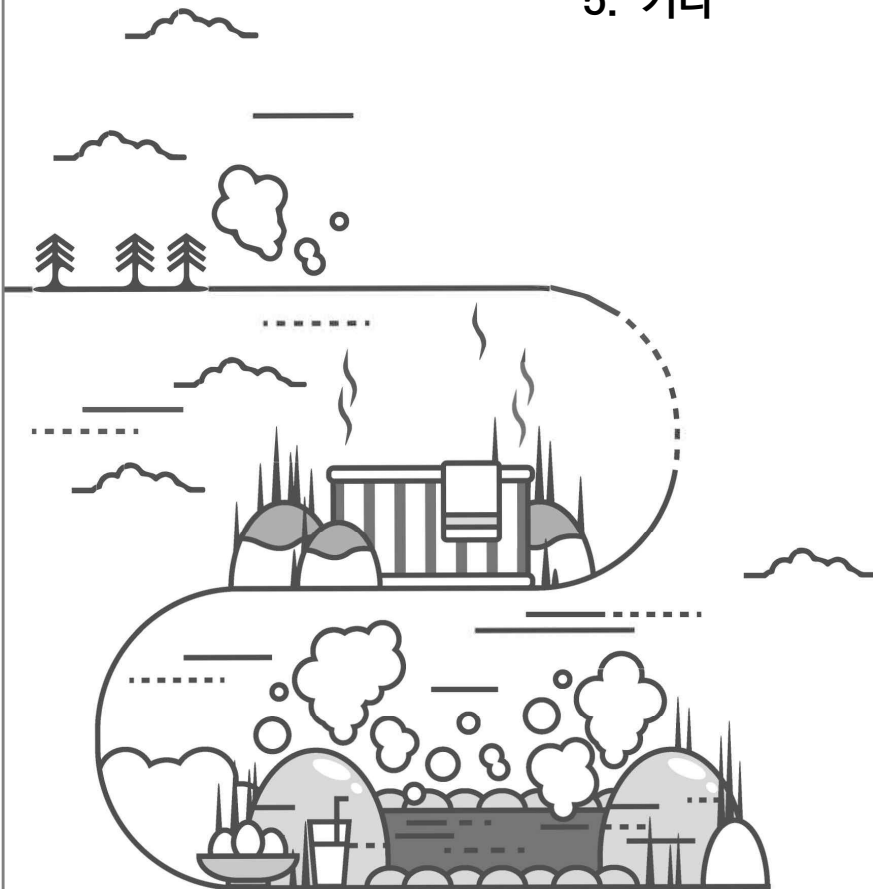
[행정절차법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참조]

【 온천이용시설 지도점검 실시계획(예시) 】

- 점검대상 : 온천이용시설
- 점검기준 : 연간 1회 이상
  - 시·도 반기별 1회, 시·군·구는 분기별 1회 원칙(자체 계획을 수립·시행)
- 점검방법
  - 시설점검 : 건축업무담당 부서와 합동
  - 위생점검 : 보건·위생부서와 합동
- 점검내용
  - 온천의 온도
  -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
  - 온천이용 허가량 초과 사용여부
  -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
  - 온천이용 허위·과장광고 여부
  -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 결과조치 : 필요한 사항의 적정 조치(법 위반시 고발조치, 행정조치 등)

## IV. 온천제도 운영

1. 온천발전종합계획
2. 보양온천
3. 온천도시
4. 온천종사자 교육
5. 기타





## IV 온천제도 운영

### 1 온천발전종합계획

#### ▶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수립·시행
  - 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
  - 2. 온천 개발계획·관리·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3.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6.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이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2 보양온천

#### ▶ 개요

-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 보양온천사업계획 포함사항(시장·군수)

1. 보양온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리적·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이용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개발계획 또는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

### ▶ 보양온천 지정절차

-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변경을 신청(경미한 변경 제외)
-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
- 시·도지사는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

### ▶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주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온천이용시설 중에서 지정
-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



〈 보양온천 지정기준 〉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온천수	온도 · 성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
		총고용물	총고용물함량 1000mg/l 이상		
		유황	총유황(H <sub>2</sub> S, S <sub>2</sub> O <sub>3</sub> , HS <sup>-</sup> ) 함량 1mg 이상		
		유리탄산	유리탄산 250mg/l 이상		
수량	이용허가 수량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최소 210m <sup>3</sup> /일 이상 □ 운동욕장 50m <sup>3</sup> /일 이상 온천욕장 160m <sup>3</sup> /일 이상	절대조건	
보양 온천 시설	시설	건강 시설 (총연면적 1,000m <sup>2</sup> 이상)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 보행욕, 보디 샤워 ◦ 넥샤워, 플로팅 ◦ 릴렉스 라이닝 3. 운동실 4. 릴렉스 존  5. 수영장	· 2급 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 욕조바닥 면적 100m <sup>2</sup>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 5종 이상 운동기구 · 수면실 외 교류 장소 · 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바닥면적 160m <sup>2</sup>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절대조건
		기본 시설	1. 프론트 로비 2. 탈의실 3. 온천욕장 4. 사우나실 5. 찜질방 6. 노천탕 7. 다목적 홀 8. 식당	· 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m <sup>2</sup> 이상 · 건식, 습식	
		부대 시설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 거리(1km이내)에 이용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		
보양 온천 환경	주변 환경	필수 사항	1. 야외공기 청정도 2. 실내공기 청정도 3. 실내 소음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 · 진동의 규제기준	절대조건
		권장 사항	1. 경관이 수려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 주변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 상수도시설 상태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으로 4분류 중 하위 100% 중 60% 이상

## ▶ 보양온천의 표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보양온천 표시 : 파란색(Cyan 100%)</li><li>2. 글씨 : 흰색</li></ol> <p>※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p> <p>※ 보양온천 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음</p>
---	---

## ▶ 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
- 시·도지사는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 가능
- 시·도지사는 보양온천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

## ▶ 보양온천의 범위 변경 및 해제 사유

1.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
3.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 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 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 ▶ 지정 현황

연번	온천명	주요성분	지정일
1	속초 설악워터피아 온천	중탄산나트륨	'09.7월 승인
2	아산 파라다이스 스파도고 온천	중탄산나트륨	'09.7월 승인
3	예산 덕산 스플라스 리솜 온천	중탄산나트륨	'09.12월 승인
4	동해 그랜드 관광호텔 온천	중탄산나트륨	'10.7월 승인
5	창원 마금산 원탕 관광 온천	염화나트륨	'15. 7월 승인
6	울진 덕구 온천	중탄산나트륨	'15.11월 승인
7	거제 거제도 해수 온천	염화나트륨	'18. 3월 승인

※ 조건부 승인 : 충주 중원온천, 화순 도곡비오매드온천, 제주 삼매봉온천

## 3 온천도시

### ▶ 개요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 ▶ 온천도시 지정 절차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
-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시장·군수는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
-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시장·군수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 온천도시 지정기준

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
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
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 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 온천도시 해제기준

1.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2.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온천종사자 교육

## ▶ 개요

-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음
  - \* 온천종사자의 정의 :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飲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종사자 교육을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온천종사자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제외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함

## ▶ 교육내용 및 방법

###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 4. 온천행정 등 기타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 온천협회는 온천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는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 교육의 유예 및 대리참석

- 온천종사자가 다음의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음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예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온천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음

#### ▶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 온천협회장은 시장·군수에게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
- 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5 기타

#### ▶ 행정안전부장관의 시정요구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온천법에 따른 승인·신고수리·허가를 할 때 온천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 대도시에 관한 특례

-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 시장·도지사로 봄

- 적용범위
  1.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제5조)
  2. 보양온천의 지정(제9조)
  3. 온천개발계획의 수립(제10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대상]** 온천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에도 해당

#### ▶ 온천전문검사 의뢰

- 시장·군수는 다음의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
  1. 굴착허가
  2. 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3. 온천의 이용허가

#### ▶ 청문

- 시장·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함
  1. 굴착허가의 취소
  2.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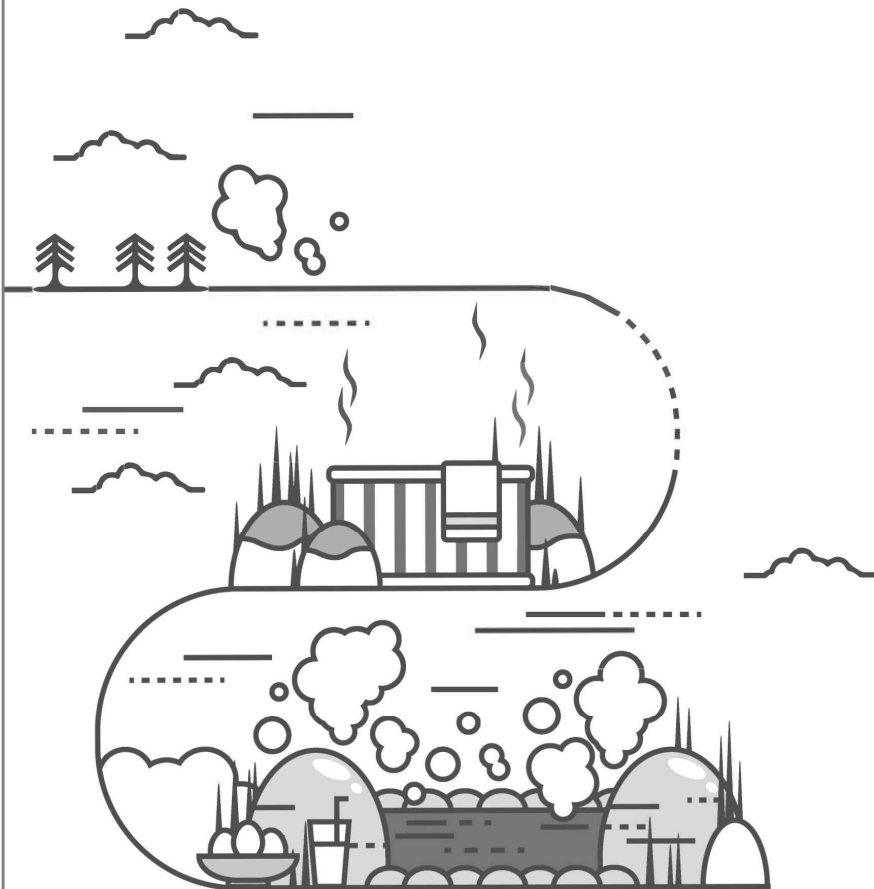
**[행정절차법의 준수]**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 등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 준수





## V. 수수료 및 벌칙

1. 수수료
2. 벌칙
3. 과태료
4. 규제의 재검토





## V

# 수수료 및 벌칙

## 1

### 수수료

#### ▶ 개요

- 굴착허가,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온천의 이용허가, 수질·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함
  - 수질·성분검사가 온천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변경도 동일)
  -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
- \* 시장·군수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 수수료 대상 및 금액

1.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
2.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 증가 허가 : 공당 3만원
3.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
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
5.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
6. 수질검사 :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
7. 성분검사 :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금액

###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착한 자,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
3. 보양온천 표시, 온천 표시, 온천과 관련한 거짓·과장 광고한 자
4.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
2. 지하수를 개발한 자
3.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

### ▶ 300만원 이하의 벌금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

### ▶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온천원보호지구(구역)에서 토지를 굴착에 대한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조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온천원보호지구(구역)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수질·성분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종사자

\*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

###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내(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1257('15.4.9.)) 참조]

#### 〈 과태료의 부과기준 안내(온천법 제37조 관련) 〉

1. 온천법 제37조(과태료) 산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과 타법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산정사례를 참고하여 적절한 온천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하고자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을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와 음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수질검사 결과 미게시 나. 성분검사 결과 미게시 다. 음용상 주의사항 미게시	법제37조제1항 제1의2호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2.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거짓보고한 경우 다.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37조제1항 제2호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3.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법제37조제1항 제3호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 ▶ 온천법의 규제 재검토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
  1.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2. 온천의 이용허가
  3. 온천의 공동급수
  4. 과태료

### ▶ 온천법 시행령의 규제 재검토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굴착허가
  2. 지하수 개발 허가
  3. 온천의 이용허가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3. 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 ▶ 온천법 시행규칙의 규제 재검토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2.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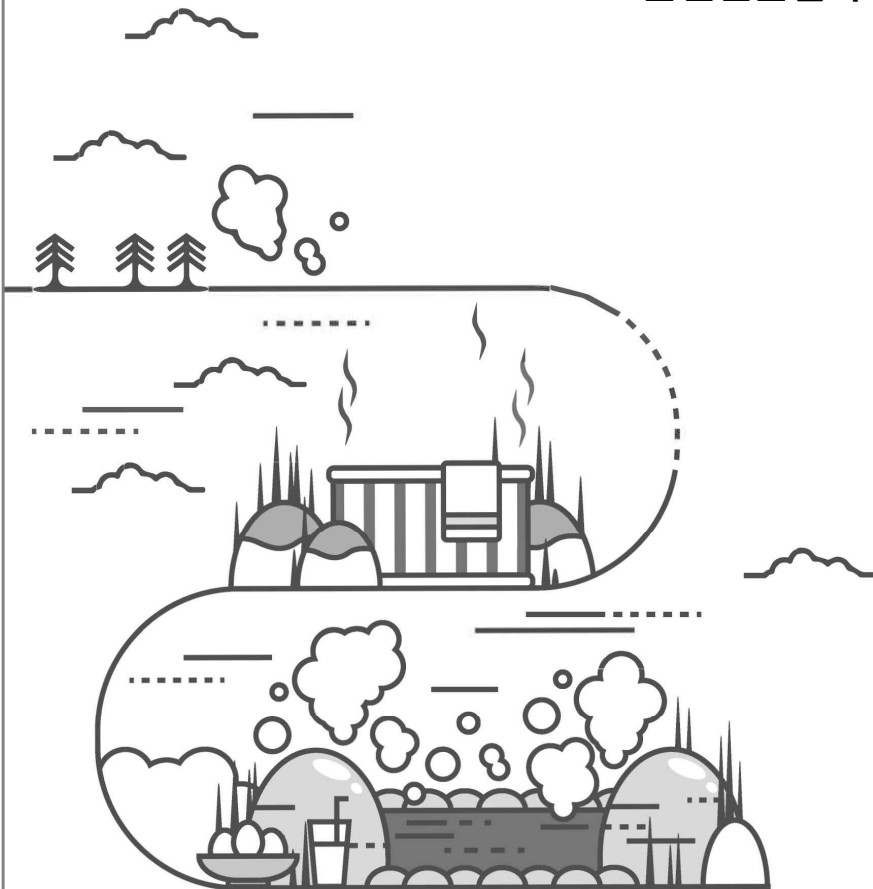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1.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2.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3.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 VI. 참고자료

1.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3. 온천전문검사지침







# 1.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7. 26] [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등 「온천법」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양온천의 지정기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온도·성분 및 주변 환경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중에서 전국 또는 광역적인 수요·공급 상황,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사업계획의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에 대한 기여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인정되는 온천이용시설을 보양온천으로 지정한다.

②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보양온천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양온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신청한 온천에 대하여 지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 대하여 보양온천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온천법」 제10조의 온천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보양온천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지리적·경제적 여건, 수요전망 및 기대효과
3. 온천수의 특징, 개발·이용계획 및 보전·관리계획(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포함)
4.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정비계획, 환경 정비계획 및 관리운영계획
5. 주변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의 연계 개발·활용계획
6. 사업의 시행주체, 시행방법 및 재원조달방법
7.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체계 및 내용
8. 건강체험 프로그램 등 보양온천 운영방안

9. 그 밖에 행정적 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행정착오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의 지정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보양온천 지정을 승인하면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양온천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보양온천 지정의 취소)** ① 시·도지사는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양온천에 대하여 사업의 시행주체가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양온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시작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양온천의 표시)** 보양온천의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6조(보양온천에 대한 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이 복지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복합시설을 갖춘 국민휴양단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복지시설, 의료시설 및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의 설치
2. 자금의 우선 융자·지원, 각종 조세·부담금·사용료 등의 경감
3. 보양온천에 대한 안내, 정보제공 및 국내외 홍보 등 필요한 조치

**제7조(세부 운영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보양온천의 승인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부칙 〈제39호, 2008.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4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보양온천환경의 지정조건란 중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⑨부터 ⑳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⑰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56호, 2014. 1.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⑫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7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4>까지 생략



**보양온천 지정기준(제2조제2항 관련)**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지정기준	지정조건	비고
온천수	온도	온도	용출온도 35℃ 이상		각 소항목 중 1항목 해당
	성분	총고용물	용출온도 25℃ 이상 총고용물함량 1000mg/l 이상		
		유황	용출온도 25℃ 이상 총유황(H <sub>2</sub> S, S <sub>2</sub> O <sub>3</sub> , HS <sup>-</sup> ) 함량 1mg/l 이상		
		유리탄산	용출온도 25℃ 이상 유리탄산 250mg/l 이상		
수량	이용허가수량	1일 최대이용 인원(8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량	· 최소 210m <sup>3</sup> /일 이상 □ 운동욕장 50m <sup>3</sup> /일 이상 온천욕장 160m <sup>3</sup> /일 이상	절대조건	
보양온천시설	시설	건강시설 (총연면적 1,000m <sup>2</sup> 이상)	1. 건강상담실 겸 응급조치실 2. 운동욕장(5가지 기능) ◦ 보행욕 ◦ 보디 샤워 ◦ 넥샤워 ◦ 플로팅 ◦ 릴렉스 라이닝 3. 운동실 4. 릴렉스 존 5. 수영장	· 2급 이상 응급구조사 상주 · 욕조바닥 면적 100m <sup>2</sup>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 5종 이상 운동기구 · 수면실 외 교류 장소 · 길이 25미터 이상 또는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바닥면적 160m <sup>2</sup> 이상 수상인명구조요원 상주	절대조건
		기본시설	1. 프론트 로비 2. 탈의실 3. 온천욕장 4. 사우나실 5. 찜질방 6. 노천탕 7. 다목적 홀 8. 식당	· 고온탕, 온탕, 냉탕 등 욕조바닥면적 50m <sup>2</sup> 이상 · 건식, 습식	
		부대시설	1. 숙박시설 보유 또는 근접거리(1,000미터 이내)에 이용 가능 2.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제휴관계가 있을 것		
보양온천환경	주변환경	필수사항	1. 야외공기 청정도 2. 실내공기 청정도 3. 실내 소음도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환경기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절대조건
		권장사항	1. 경관이 수려 2. 녹지(공원) 등이 잘 정비 3. 주변 위생처리 상태가 양호 4. 양호한 환경보호 상태 5. 상수도시설 상태 6. 교통 및 주차장의 편리 7. 재해에 대한 안전도 8. 보도 확보 및 정비 상태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4분류하여 100% 중 60% 이상

[별표 2]

**보양온천 표시**(제5조 관련)



비고

1. 보양온천 표시 : 파란색(Cyan 100%)

2. 글씨 : 흰색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 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음.

※ 보양온천 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음.



## 2.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시행 2018. 5. 4.]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37호, 2018. 5.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 및 온천법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 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실시기관)** ① 온천종사자 교육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회에 대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교재, 교육비 및 회계 등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회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시정명령 등을 지체 없이 수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시간)** ① 온천종사자는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에 의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등의 온천종사자로서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인정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유 및 교육대상자 인적사항을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제1항의 교육을 가급적 총회 등 온천종사자 소집이 용이한 시기에 맞추어 실시한다.

**제4조(교육내용 및 방법)**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온천에 관한 일반사항

가. 온천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온천의 기준과 온천자원의 해설과 운용

다. 온천개발절차 및 관련규제 사항

라. 온천성분검사, 온천영향검사, 온천자원조사 등 온천검사에 관한 사항

마. 온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

바. 온천발전시책에 관한 사항 등

2. 온천이용시설의 위생관리를 포함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위생교육

3. 온천서비스 향상 및 온천종사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4. 온천행정 등 기타 온천교육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회는 온천종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는 교육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교재의 편찬 등)** 협회장은 제4조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과정 편성)**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온천종사자의 거주지역과 업무 및 업종유형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 온천업무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장소)** 교육장소는 교육대상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피교육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서 교통이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제9조(수강료)** ① 협회장은 피교육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장소 등을 고려하여 실비수준으로 협회장이 결정한다.

③ 협회장은 수강료를 결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유예)** ① 온천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온천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온천종사자에 대하여 1년 범위 안에서 교육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중이거나 거동이 심히 곤란한 자
2.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의 결혼, 회갑이나 사망시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일신 전속적인 교육이나 법원 등예의 출석, 증언, 재판을 받기 위한 경우
4. 업무와 관련한 국외여행시
5. 기타 시장·군수가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라 온천종사자교육을 유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교육연기원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시행규정 및 교육계획의 승인)** ① 협회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된 교육시행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의 목적
2. 교육과목 및 교육교재 편찬방법
3.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4. 강사 및 수강료에 관한 사항
5. 결장 등에 관한 조치사항
6. 기타 교육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 교육계획을 다음 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예상인원
2. 교육장소
3. 수강료 및 산출내역
4. 교육실시 방법(대상별, 지역별 등)
5.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교재포함)
6. 과목별 교육시간
7. 기타 온천교육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협회장은 교육시행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와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하여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정지시를

할 수 있으며 협회장은 그 지시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통지서송부 및 교육결과보고)** ① 협회장은 교육예정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 온천명 및 주소
2. 교육일시 및 장소
3. 수강료 및 지참물 등 구체적인 교육안내
4. 불참사유 발생시 사전 통보의무 고지
5. 교육 불참시 불이익 발생 고지

② 협회장은 교육실시후 피교육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에 기재하여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이버교육 실시후 피교육자의 수료증 교부는 사이버교육 수료자가 직접 출력하는 것으로 같음한다.

③ 협회장은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실시후 1월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해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리 참석교육)** ①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중위생관리 책임자지정 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한 후 온천종사자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을 이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행정지원)** ① 시장·군수는 신규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온천이용허가자의 지위승계 신고 및 이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동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에서 온천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회장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불참자에 대한 조치)** ① 협회장은 매 교육이 종료될 때마다 시장·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교육참석 및 불참현황을 사이버교육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온천종사자가 교육 통보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협회장이 시장·군수에게 불참자로 통보하였을 경우 시장·군수는 통보받을 때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온천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처리)** ① 협회장은 교육실시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한다.

② 교육실시에 따른 수강료 등 수입금은 교육실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0-71호, 2010. 10. 29.>**

①(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된온천사업자는 이 지침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2014-1호,2014. 11. 2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안전행정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2호,2016. 3. 20.>**

(일몰제 설정을 위한 기탁물품 접수 허용 책임운영기관 지정·고시 등 개정)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37호, 2018.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천종사자교육 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사이버교육 수료자는 온천종사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 온천종사자 교육소집 통지서

수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0000년에 실시하는 온천종사자교육 소집을 통지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불참시에는 온천법 제 37조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교육일시				
교육장소				
준비물				

20 년 월 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
-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일지라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 교 육 연 기 원

영 업 장	은천명			
	소재지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개시일		전화번호	
공중 위생 관리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성별	
	직위		지정일	
교육일시				
<p><u>연 기 사 유</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0px;"> <span style="margin-right: 50px;">년</span> <span style="margin-right: 50px;">월</span> <span>일</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span style="margin-right: 150px;">대표자</span> <span>(서명)</span> </p> <p style="margin-top: 20px;"><b>특수법인 한국은천협회 회장 귀하</b></p>				

※ 교육연기원을 협회 홈페이지에서 입력하거나, 팩스(02-723-5003)로 제출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

# 수료증

(온천종사자 교육)

온 천 명 :

영업소재지 :

대표자 성명 :

귀하는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당 협회에서 실시하는 0000년도 온천종사자 교육을 수료 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 년 월 일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 교육수료증교부(교육확인)대장

교육일자 :

번호	온천명	소재지 (시·군까지)	대표자 성명	참석자		접수자		비고
				성명	서명	교육비	수료증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영 업 장	온천명			
	소재지	시(도)	구(군)	동(읍,면)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개시일			전화번호
	핸드폰			팩스
	이메일			
	회원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회원		<input type="checkbox"/> 비회원
공 중 위 생 관 리 책 임 자	성명			생년월일
	핸드폰			성별
	직위			지정일

온천법 제26조에 의하여 공중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 온천대표가 직접 온천종사자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책임자 기입 생략가능
-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
- 회원사인 경우에는 이메일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온천관련 최신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공중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협회 홈페이지에 입력하거나, 팩스 (02-723-5003)로 제출

#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 지자체장  
제 목 온천종사자 교육실시 결과보고

「온천법」 제26조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온천종사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가. 일 시 :
- 나. 장 소 :
- 다. 실시현황

구분 시·군·구별	대상 인원	참가자				불참자			비고
		계	집합	사이버	비율(%)	계	신고	무단	

라. 참가자 및 불참자 인적사항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장 (인)





### 3. 온천전문검사지침



# 목 차



I. 온천전문검사의 목적 .....	129
II. 온천전문검사의 종류 .....	130
1. 온천부존조사 .....	130
2. 온천공검사 .....	130
3. 온천공영향조사 .....	132
4. 온천자원평가조사 .....	134
5. 정기온천자원조사 .....	135
6. 성분검사 .....	136
III. 온천전문검사 항목 및 내용 .....	137
1. 온천부존조사 .....	137
1-1. 지형 및 수계조사 .....	137
1-2.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	137
1-3.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	137
1-4.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	137
2. 온천공 검사 .....	138
2-1. 지하수위 관측 .....	138
2-2. 물리검층 .....	139
2-3.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	139
2-4. 단계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	139
2-5. 1일 적정 양수량 산정 .....	140
2-6. 장기 양수시험 .....	141
2-7. 성분검사 .....	141

3. 온천공영향조사 .....	142
3-1. 영향의 정도 .....	142
3-2. 온천공검사 실시 .....	143
3-3. 영향비율 계산 및 적정양수량 산정 .....	143
3-4.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의 신규 온천굴착공 수위강하 .....	144
4. 온천자원평가조사 .....	144
4-1. 온천공검사 실시 .....	144
4-2. 온천공영향조사 실시 .....	144
4-3. 1일 적정 양수량 및 온천개발면적 산정 .....	144
5. 정기온천자원조사 .....	145
5-1. 온천공 현황파악 .....	145
5-2. 수량관측 .....	145
5-3. 온천수위 관측 .....	145
5-4. 양수시험 .....	145
5-5. 성분분석 .....	145
5-6. 적정 양수량 산정 .....	145
6. 성분검사 .....	147
6-1.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147
6-2.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147
6-3. 광천온천의 분류(염화물광천온천, 황산염광천온천, 탄산염광천온천) .....	148
6-4.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148
<input type="checkbox"/> 온천공검사 및 신고수리 추진체계 .....	149
<input type="checkbox"/>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 .....	150

<b>IV.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b> .....	<b>153</b>
<b>1. 목적 및 관련근거</b> .....	153
1-1. 목적 .....	153
1-2. 관련근거(온천법) .....	153
<b>2. 온천전문검사의 위탁운영 및 관리·감독</b> .....	154
2-1. 위탁의 대상 .....	154
2-2. 위탁운영 체계 .....	154
2-3. 위탁계약 체결 .....	154
2-4.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154
<b>3. 온천전문검사 협의회 구성·운영</b> .....	155
3-1. 목적 .....	155
3-2. 임원 구성 .....	155
3-3. 회의 소집 .....	155
3-4. 회의록 작성·보관 .....	155
3-5. 의결의 효력 .....	155
<b>4. 위탁운영 행정지원</b> .....	156
4-1. 학술위원회 설치·운영 .....	156
4-2. 자료의 보존·관리 .....	156
4-3. 회계처리 .....	156
<b>5. 온천전문조사 추진체계</b> .....	157
5-1. 온천부존조사 .....	157
5-2. 온천공검사 .....	158
5-3. 온천공영향조사 .....	159
5-4. 온천자원 평가조사 .....	160
5-5. 정기온천자원조사 .....	161

## **【참고자료】**

-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162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163
-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 164

# I

## 온천전문검사의 목적

- 온천은 온천법에 의해 굴착되어 그 타당성을 온천전문검사으로써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의 온천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으며 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온천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 온천법 제2조에 의한 온천의 정의는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지하로부터 용출된다는 의미는 자연용출은 물론 시추공의 굴착을 통하여 인위적인 양수를 포함한다.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때에는 온천법에 의해 굴착허가를 받아야 하며,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 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발견신고공 및 보조공에 대하여 온천공검사를 실시하는데 용출온도,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분석 등을 평가한다.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을 이용하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이 5년이며, 매 5년마다 온천자원조사를 실시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시행되는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 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 등을 재평가하게 된다. 이외에도 온천공들간의 온천수 영향관계를 조사하여 적정 양수량을 조정하거나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기도 한다.
- 이 지침은 온천법에 의해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수행하는 각종 온천조사에 대한 수행방법 및 기술적인 내용을 수록하고 그 운영 및 해석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조사의 표준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II 온천전문검사의 종류

### 1 온천부존조사

- 조사목적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시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12조(굴착허가) ① 온천수를 솟어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의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온천공검사

- 조사목적 :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
  - 최초 온천발견신고를 위하여 시행하는 온천공 검사인 경우,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온천협회 관계자 입회하에 검사하여야 함
  - ※ 최초 온천공검사를 시행하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은 검사실시일자, 검사인력, 검사일정(시간단위)을 검사일 15일전까지 온천협회에 통보하여야 함



- 관련근거 : 온천법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 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행령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 질산성질소(NO<sub>3</sub>-N)는 10mg/L 이하일 것
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sub>2</sub>Cl<sub>4</sub>)은 0.01mg/L 이하일 것
3. 트리클로로에틸렌(C<sub>2</sub>HCl<sub>3</sub>)은 0.03mg/L 이하일 것

시행규칙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 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 3 온천공영향조사

○ 조사목적 : 기존 온천공 주위에 신규로 굴착된 개발공에 대한 조사로서 개발공과 인접된 온천공, 지하수공간의 수위 영향정도 판단 및 수위 영향관계를 고려한 온천공(보조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조정을 위한 조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
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 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2. 1일 적정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 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 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 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
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
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
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없이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하여 검사한 후 온천발견 신고를 수리 또는 반려하여야 한다.

- 조사목적 : 온천발견 신고공을 포함하여 1~2개 이상의 보조공에 대한 온천공검사 및 온천공영향조사를 통한 1일 적정 양수량, 온천수 영향범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
  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

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
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
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

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5

### 정기온천자원조사

○ 조사목적 : 온천지구(구역) 지정 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온천이용허가를 득할 때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 조사로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온천법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②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규칙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3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 제출시기 : 온천이용허가 만료일 30일 이전

- 검사목적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검사
- 관련근거 : 온천법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제12조제1항관련)

구 분	검 사 기 관	검 사 주 기	검 사 항 목
수질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연 1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체에의 유해여부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음용적합 여부를 포함한다)
성분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분(total S-2 성분함량), 유리탄산(free CO <sub>2</sub> )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 Ⅲ

## 온천전문검사 항목 및 내용

### 1

## 온천부존조사

### < 조사개요 >

- ▶ 토지를 굴착하기 전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로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

### 1-1. 지형 및 수계조사

- 온천공을 굴착할 지역에 대한 지형, 수계(하천의 경계), 굴착공 위치, 및 수계 범위에 대한 조사

### 1-2.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 조사지역에 대한 암석분포, 생성연대 및 지질구조에 대한 조사

### 1-3.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 굴착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의 온천공(반경 10km 이내) 및 지하수공(반경 300m 이내) 현황, 굴착심도, 적정양수량 등 조사

### 1-4.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 굴착할 시추공에 대한 굴착심도, 공경, 케이싱 설치심도에 대한 주상도(단면도)

## &lt; 검사개요 &gt;

- ▶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 등을 평가. 검사항목으로는 조사공 내의 지하수위 관측, 온도 및 물리검층, 양수시험 및 성분분석 등이다. 온천공검사의 검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2-1. 지하수위 관측

- 지하수위의 변화는 크게 장기적인 요인과 단기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기적인 변화요인으로는 기후에 따른 강수량의 변화, 장기적인 양수 및 달의 공전에 의한 대수층의 압력변화 등이 있다. 단기적인 변화요인으로는 단기적인 채수, 1일 달의 인력(引力)변화, 지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에 따라 지하수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므로 양수시험 전에 일정 기간동안 지속적인 수위관측 통하여 기준수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 지하수위 관측은 15일 이상 조사공의 수위를 관측하여 1일 수위 상승(하강)율이 평균 0.5m 이내로 3일 이상 유지한 상태 하에서 단계양수시험 직전의 수위를 기준수위로 한다. 1일 수위 상승(하강)율이 계속 0.5m이상일 경우에는 30일까지 관측할 수 있으며, 가장 안정된 수위를 기준수위로 본다. 만약 주위의 온천공 또는 지하수공의 양수에 의해서 조사공의 수위 상승, 하강이 1회 이상 반복되어 나타나고 그 폭이 1m 이상인 경우는 기존공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온천공 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준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을 경우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100m 수위강하는 해수면으로부터 100m까지로 한다. 자연 용출인 경우는 용출되는 지점인 케이싱 상단부를 기준수위로 하며, 15일 이상 자연 용출시켜 용출율이 안정된 후 양수시험을 시작한다.



## 2-2. 물리검층

- 시추공 내의 지질상황 판단은 시추할 때에 회수되는 암석의 코아를 감정함으로써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코아가 없을 경우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를 감정하게 되는데 이들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물리검층이다. 이 물리검층의 방법에는 온도검층, 자연감마선검층, 전기전도도검층, 전기검층 등이 있으며, 시추공 내의 지온경사, 굴착 심도 확인, 대수층 구간 파악, 케이싱 설치구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온천공검사시 물리검층은 온도검층을 포함한 2가지 이상의 물리검층을 실시한다.

## 2-3.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 수중모터펌프 설치시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서 입회를 하여야 하며 이때 장비설치의 확인 및 그 이외의 목적으로 부착되는 장비가 없도록 확인한다. 설치장비는 한 개의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며, 용량은 수위강하 100m 내외를 강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수위측정관은 기준수위로부터 150m 이상 설치하며, 내경은 30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토출관 상단부에는 압력계(10kgf/cm<sup>2</sup> 이상), 수량조절 밸브 및 유량계(오리피스 등)를 부착하며, 수량조절에 따른 과다압력 방지를 위해 보조 토출관(내경 2인치 이상)을 설치한다.

## 2-4. 단계양수시험 및 회복시험

- 조사공의 비수위강하 등을 산출하며, 이에 따른 적정양수량 산정 등을 위해 이 시험을 실시한다.
- 적은 양수율에서 많은 양수율로 양수율을 변화시키면서 4단계 이상 실시한다.
- 최대 양수율은 수위강하가 100m 내외가 되는 양수율로 하며 수중펌프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중펌프의 최대용량 이내에서 결정한다.

- 첫 단계의 양수시간은 1,000분 이상으로 하며 두 번째 단계부터는 300분 이상으로 한다. 각 단계가 수위회복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양수시험이므로 로그가중평균법 등을 이용하여 양수시간을 보정하여 해석한다.
- 또한, 단계양수시험은 각 단계별 양수율이 일정율이 아닌 자연감소율로 시험할 수 있다.
- 단계양수시험 후 회복수위를 계속 관측하여 수위강하량의 95% 이상 수위를 회복시켜야 한다.

## 2-5. 1일 적정 양수량 산정

- 단계양수시험을 통하여 48시간 후의 단계별 예측수위를 구하고, 양수율과 예측수위 관계를 이용하여 수위강하식을 산출한다.

$$s_w = BQ + CQ^n$$

- 조사공의 수위강하( $s_w$ )가 100m일 때의 양수율( $Q_{100}$ )을 구한다.
- 단계양수시험 후 수위회복 그래프에서  $t'_{95}$ (총수위강하량에서 95%까지 회복될 때의 시간)를 구한다.
- 1일 적정양수량( $Q_s$ )은 아래 식으로 산정한다.

- 신고공 :  $Q_s = 300 + (Q_{100} - 300) \times ((t_{sc} / (t_{sc} + t'_{95}))$  (단,  $Q_{100} \geq 300$ )

- 보조공 :  $Q_s = 150 + (Q_{100} - 150) \times ((t_{sc} / (t_{sc} + t'_{95}))$  (단,  $Q_{100} \geq 150$ )

$t_{sc}$  : 마지막 단계양수율 최종보정시간

- 단, 1일 적정 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시의 최대양수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고공의 경우 적정양수량이 300 m<sup>3</sup>/day 미만인 경우 보조공의 적정양수량 산정방법을 따르며, 보조공의 경우  $Q_{100}$ 이 150 m<sup>3</sup>/day 미만인 경우 적정양수량은  $Q_{100}$ 으로 한다.

## 2-6. 장기 양수시험

- 단계양수시험에서 산정된 적정양수량 범위 내에서 48시간 양수하며, 수위강하, 양수온도 등을 확인하여 적정양수량으로서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 용출온도 : 1일 적정 양수량으로 양수할 때 24시간 이후의 양수온도 중 최저온도를 의미하며 °C로 표기한다. 온천법에서 정한 “25°C 이상의 온수”는 이 용출온도를 기준으로 판별한다.

## 2-7. 성분검사

- 온천수에 함유된 성분의 특성을 파악하고 수질 유형을 분류
- 양수시험시 현장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분석을 실시한다.
- 검사기관 및 검사항목
  - 온천전문검사기관
  - 수소이온농도, 수질 유형을 분류하는 이온성분 분석

## &lt; 조사개요 &gt;

- ▶ 온천공영향조사는 신규로 굴착된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의 기존 온천공 및 지하수공에 대한 조사로서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기간동안 신규온천공과 인접된 기존의 온천공, 지하수공간의 수위 영향정도 판단 및 수위 영향관계를 고려한 보조공의 1일 적정양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조사이다. 온천공영향조사의 조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 3-1. 영향의 정도

- 양수시험시 수위강하는 양수정에서 급격하게 발생되며 양수정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위강하는 적게 나타난다. 그림 3-1은 양수정에서 양수시험시 일정시간 경과후 나타날 수 있는 수위강하의 단면도이며, 그림 3-2는 이를 3차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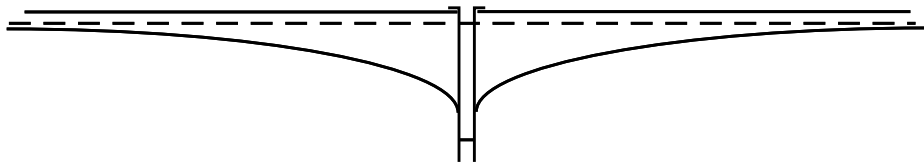


그림 3-1. 양수시 일정시간 경과 후의 수위강하의 단면도

- 조사공에서 양수를 실시하고 어느 일정시간 경과 후에는 그림 3-1과 같이 수위강하가 발생되는데 이 주위에 기존 온천공이 있는 경우 기존 온천공에서도 수위강하가 발생된다. 기존 온천공이 조사공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수위강하가 많이 발생되며, 먼 곳에 있는 경우는 수위강하가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된다. 따라서 이를 두 공간의 영향의 정도는 거리에 반비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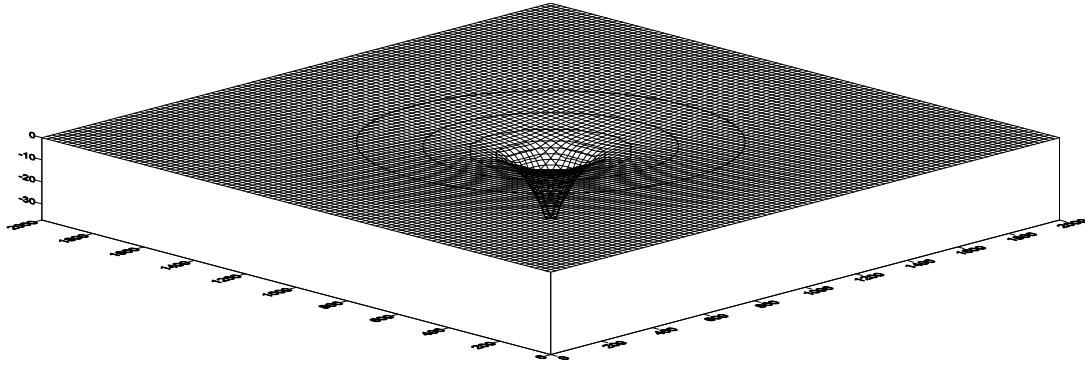


그림 3-2. 양수시험시 수위강하의 3차원 모형

### 3-2. 온천공검사 실시

- 검사공의 적정양수량을 산출하기 위해 상기와 같이 온천공검사를 실시한다.
- 검사공의 주변 공들과 “영향을 제거하지 않은 1일 적정양수량( $Q_{s+e}$ )”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 신고공 :  $Q_{s+e} = 300 + (Q_{100}-300) \times ((t_{sc} / (t_{sc}+t'_{95}))$  (단,  $Q_{100} \geq 300$ )
  - 보조공 :  $Q_{s+e} = 150 + (Q_{100}-150) \times ((t_{sc} / (t_{sc}+t'_{95}))$  (단,  $Q_{100} \geq 150$ )
  - $Q_{100}$ 이  $150 \text{ m}^3/\text{day}$  미만인 경우  $Q_{s+e}$ 는  $Q_{100}$ 으로 한다.
  - 단,  $Q_{s+e}$ 는 단계양수시험시의 최대양수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3-3. 영향비율 계산 및 적정양수량 산정

- 조사공의  $Q_{s+e}$ 로 2일간 장기양수시 주위의 기존 공들에서 영향수위를 관측하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공의 수위강하를 “최대영향수위( $s_{max}$ )”라 한다.
- 조사공이 기존공에 미치는 “최대영향비율( $e_{max}$ )”은 아래식으로 표현한다.

$$e_{max} = s_{max}/s_w \times 100(\%)$$

-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미치는 영향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 $e_{max} \geq 2\%$ ” 일 때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 주변공과의 영향을 제거한 조사공의 “1일 적정 양수량( $Q_s$ )”은 아래식으로 한다.

$$Q_s = Q_{s+e}(1 - e_{\max})$$

### 3-4.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 내에서의 신규 온천굴착공 수위강하

- 기존 온천공들을 계속 사용하여 온천지구 전체의 수위가 해수면 아래에 있는 경우 신규 온천굴착공의 기준수위는 해수면으로 한다.

## 4 온천자원평가조사

### < 조사개요 >

- ▶ 한 지역 내에 2개 혹은 3개 이상의 온천공을 굴착시 각 공의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온천원보호지구 등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를 말한다. 온천자원평가조사의 조사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한다.
- ※ 갈수기, 풍수기 포함의미

#### 4-1. 온천공검사 실시

- 한 지역에 최초로 발견된 온천발견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한 “온천공검사”를 실시한다.

#### 4-2. 온천공영향조사 실시

- 온천발견신고공을 제외한 온천굴착공에 대해 “온천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기존공의 영향을 제거한 적정양수량을 산출한다.

#### 4-3. 1일 적정 양수량 및 온천개발면적 산정

- 한 지구 내의 총적정양수량( $Q_{st}$ )은 각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Q_s$ )의 합으로 한다.
- 온천개발면적( $A$ ) 산정은 아래식으로 한다.

$$A(m^2) = 66.2 \times Q_{st}$$

**< 조사개요 >**

- ▶ 온천지구(구역) 지정 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온천이용허가를 득할 때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로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최초 온천이용허가일로 기준하여 동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모든 온천공을 함께 조사한다. 온천원보호지구의 조사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하며, 온천공보호구역의 조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5-1. 온천공 현황파악**

- 온천원보호지구 등에 있는 온천공들의 위치, 소유자, 심도, 공경, 기 적정양수량 등을 파악한다.

**5-2. 수량관측**

-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15일 이상 수량을 관측한다.

**5-3. 온천수위 관측**

-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계속적인 15일 이상 수위변화를 관측한다.

**5-4. 양수시험**

- 온천공들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양수시험이 가능한 경우에 양수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수량관측 및 온천수위 관측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5-5. 성분분석**

- 온천수에 대한 수온, 현장분석 및 실내분석을 실시한다.

**5-6. 적정 양수량 산정**

- 사용량과 수위강하 : 사용량에 따른 수위변화 관계를 파악하여 온천수 사용시의 수위강하, 중단시의 회복수위를 해석한다.

- 1일 최고수위와 1일 평균수위 : 사용량 관측시점을 기준으로 1일 최고수위와 1일 평균수위를 해석하며, 이들 간의 차이를 “1일 평균수위강하량”이라 한다.
- 1일 사용량( $Q$ )과 1일 평균수위강하량( $\overline{s_w}$ ) 관계 해석 : 사용하고 있는 온천공에 대하여 각각의 1일 사용량과 1일 평균수위강하량 관계를 해석하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한다.

$$\overline{s_w} = AQ + DQ^n$$

$A$  : 수위강하상수

$D$  : 비평형상수

$n$  : 비평형지수

- 기준수위( $s_0$ )설정 : 정기 온천자원 조사시 기준수위는 관측기간 동안의 1일 최고수위의 평균값(지표로부터의 깊이)으로 한다.
- 기준수위로부터 100m 수위 강하시의 최대양수량( $Q_{100}$ ) 산출
  - 상기 수위강하식( $\overline{s_w}$ ), 1일 사용량 및 평균수위 등을 이용하여 기준수위로부터 100m 수위강하시의 최대양수량을 산출한다.
  - 기준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을 경우 100m 수위강하는 해수면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양수량을 산출한다.
  - 수위강하식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간편식을 이용하여 최대양수량을 산출할 수 있다.

$$Q_{100} = Q_{avg} \times 100m / (s_{avg} - s_0)$$

$Q_{avg}$  : 평균양수량( $m^3/d$ )

$s_{avg}$  : 지표로부터 평균수위(m)

$s_0$  : 기준수위(m), 기준수위가 해수면보다 낮은 경우 지표로부터 해수면까지의 깊이를 적용



- 수량초과율 산정 : 최대양수량과 기존 적정양수량(허가량)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수량초과율을 산정한다. 수량초과율이 100% 이하이면 기존 적정양수량이 타당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100% 이상이면 기존 적정양수량을 감하여야 한다.

$$\text{수량초과율}(\%) = \text{기존 적정양수량} / \text{최대양수량} \times 100(\%)$$

- 수량초과율이 100% 이상인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는 온천수 보전을 위하여 온천수 적정양수량(허가량)을 감해야 하며, 기존 적정양수량(허가량)을 감하는 정도는 “수량초과율(%)×0.1”로 한다. 다만, 이 값은 최대 20% 이내로 하며, 수문관측시설의 불량으로 온천수량·수위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20%를 적용한다.

## 6

## 성분검사

### < 검사개요 >

- ▶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 특성을 규명한다.

### 6-1. 수소이온농도에 의한 분류

	~	3.0	미만	산성
3.0	~	6.0	미만	약산성
6.0	~	7.5	미만	중성
7.5	~	8.5	미만	약알칼리성
8.5	~			알칼리성

### 6-2. 주요 이온성분에 의한 형의 구분

- 주요 이온성분(양이온성분 Na, Ca, Mg, K; 음이온성분 Cl, SO<sub>4</sub>, HCO<sub>3</sub>, CO<sub>3</sub>)을 meq/ℓ로 환산한 후, 양이온과 음이온성분 각각을 100%로 비교하여 25%이상인 성분으로 형을 표시한다. 이 때 25%이상인 성분이 두 개 이상일 때 가장 높은 값의 성분을 앞에 놓고 두 번째 성분은 괄호로 묶는다. 예) Na(Ca)-HCO<sub>3</sub>(SO<sub>4</sub>)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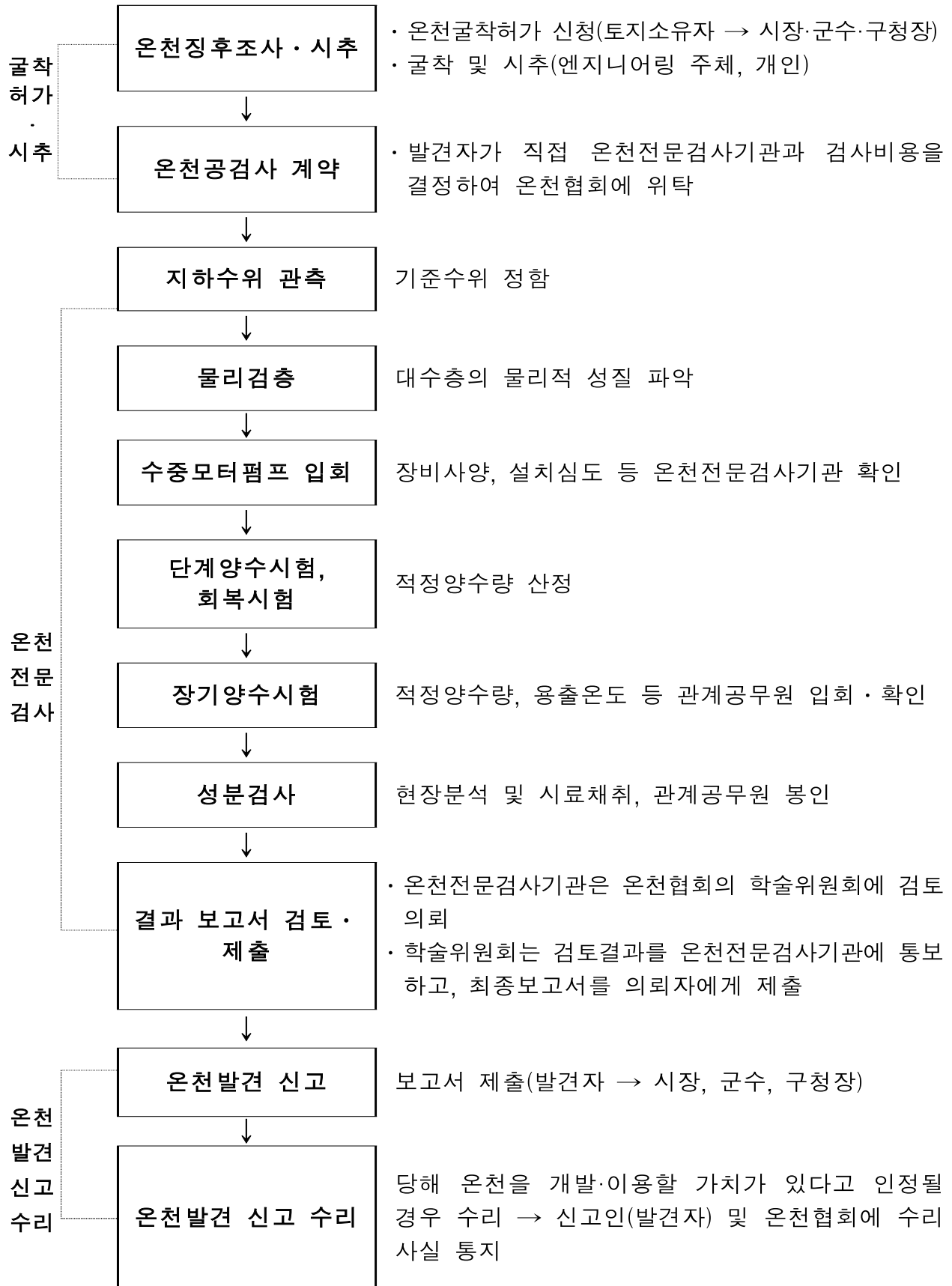
### 6-3. 광천온천의 분류[염화물광천온천, 황산염광천온천, 탄산염광천온천 등]

- 염화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l 형인 경우를 염화물광천온천이라 한다.
- 황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SO<sub>4</sub> 형인 경우를 황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탄산염광천온천 : 총고용물의 양이 1,000mg/ℓ 이상이며, 형의 분류상 Na(Ca)-CO<sub>3</sub> 형인 경우를 탄산염광천온천이라 한다.

### 6-4. 미량성분에 의한 분류

-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명칭을 부여할 수 있으며, 이 때 성분의 기원이 오염이 아니어야 한다. 예를 들면 케이싱의 영향 등일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유황온천 : 총고용물량에 관계없이 total S<sup>-2</sup> 성분함량이 0.1mg/ℓ 이상인 온천을 유황온천이라 한다(이때, SO<sub>4</sub><sup>+2</sup>성분은 황산이온성분으로 따로 표시한다). total S<sup>-2</sup> 성분함량은 S<sup>-2</sup>, HS<sup>-</sup>, H<sub>2</sub>S로 이루어지며, 대수층의 상태가 환원상태임을 의미한다.
  - 탄산온천 : 탄산가스(CO<sub>2</sub>) 성분을 250mg/ℓ 이상 함유한 경우를 탄산온천이라 한다.
  - 실리카온천 : 실리카(SiO<sub>2</sub>)성분의 함량이 40mg/ℓ 이상인 온천
  - 철온천 : 철(Fe)성분의 함량이 10mg/ℓ 이상인 온천
  - 구리온천 : 구리(Cu)성분의 함량이 1mg/ℓ 이상인 온천

## ☐ 참고 : 온천공검사 및 신고수리 추진체계



## □ 참고 :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의 상한은 아래와 같으며 상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름

- (산출예산)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재료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합한 상한액

\* 온천전문검사기관 견적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각 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산출

### < 검사대상 >

#### ① 온천부존조사

- (상한액) 9,412,316원

- (수행과업) 지형 및 수계조사,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인근지역 온천현황조사,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보고서 작성 등

#### ② 온천공검사(1개공)

- (상한액) 32,868,742원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등 설치,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수행과업) 지하수위관측, 물리검층,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단계양수시험, 장기양수시험, 보고서작성 등

#### ③ 온천공재검사(1개공)

- (상한액) 29,582,000원

※ 온천공검사의 수행과업을 따르되 물리검층을 제외하는 검사로서, 온천발견신고 완료 이후 5년을 초과하여 온천이용허가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에 실시

- (수행과업) 지하수위관측,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단계양수시험, 장기양수시험, 보고서작성 등

④ 온천공영향조사(조사공1개, 관측공 2개 이하)

- (상한액) 47,707,139원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수행과업)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등

⑤ 온천공영향조사(조사공1개, 관측공 3개 이상)

- (상한액) 54,697,626원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수행과업)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보고서 작성 등

⑥ 온천자원평가조사(온천발견신고공 제외 2개공 기준)

- (상한액) 162,868,826원

※ 온천공 조사에 필요한 수중모터펌프 및 설치비, 발전기 등 소요되는 경비는 의뢰자 부담이며, 의뢰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수행과업에 따라 협의 산정

- (수행과업)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수영향범위조사(지구답사, 원격탐사, 지질조사, 물리탐사, 수리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등

\* 온천공영향조사는 공 간의 영향을 고려한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해 필요

⑦ 정기온천자원조사(1개공, 수량수위관측)

- (상한액) 9,888,000원

※ 장비교체 · 동력사용 · 수위관측관설치 등 조사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의뢰자 부담

· 동일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조사공이 있는 경우 두 번째(2번째) 조사공부터 조사비를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온천자원관측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비용의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수행과업) 온천수사용량 조사, 지하수위 관측조사, 성분검사, 보고서 작성 등

※ 수행과업은 최소한의 조사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⑧ 정기온천자원조사(1개공, 양수시험)

- (상한액) 12,360,000원

- ※ 장비교체 · 동력사용 · 수위관측관설치 등 조사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의뢰자 부담
  - 동일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조사공이 있는 경우 두 번째(2번째) 조사공부터 조사비를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온천자원관측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비용의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온천공 미사용 및 온천공 사용 중에 토출온도가 25℃ 미만시 양수시험 조사

- (수행과업) 장기양수시험, 지하수위 관측조사, 성분검사, 보고서 작성 등

※ 수행과업은 최소한의 조사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⑨ 정기온천자원조사(전체 지구)

- (상한액) 334,717,244원

※ 장비교체 및 동력사용 등 시험에 필요한 각종 부대경비는 의뢰자가 부담하며, 지하수위관측공은 5~6개 공을, 양수시험은 5개 공을 기준으로 함(추가되는 각 공에 대한 금액은 별도 협의 산정)

- (수행과업) 기본현황조사(지구답사, 온천공현황조사, 온천수사용량 조사), 지하수위 관측조사, 양수시험(성분검사), 적정양수량 분석, 보고서 작성 등

※ 수행과업은 가장 일반적인 조사항목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함

## IV

# 온천전문검사 운영절차

## 1 목적 및 관련근거

### 1-1. 목적

- 온천법령에서 정한 온천전문검사 시행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특)한국 온천협회(이하 “온천협회”라 함)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조사과정에서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

### 1-2. 관련근거(온천법)

-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②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6조(행정안전부 소관)

- ② 「온천법」 제24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관측 사무를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

### 2-1. 위탁의 대상

-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재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 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 2-2. 위탁운영 체계

- 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전문검사 기관과 검사비용을 결정한 후 온천협회에 위탁
- 온천협회는 위탁받은 해당 전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 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약정기일내 검사보고서 초안 작성·제출
- 온천협회는 학술위원회 검토를 거친 최종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출
  - 최종 검사보고서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 및 온천협회의 직인을 병행 날인하고 학술위원회 검토서를 필히 첨부(입찰인 경우에도 동일)

### 2-3. 위탁계약 체결

- 검사비용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온천전문검사별 상한액을 참고하여 당사자간 자율 계약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함

### 2-4.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 온천협회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 위탁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
- 행정안전부장관은 규정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발생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온천협회 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 3-1. 목 적

- 온천전문검사의 위탁 운영을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운영 등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3-2. 임원 구성

- 협의회장 : 온천협회 회장을 당연직으로 임명
- 위 원 : 온천전문검사기관(온천협회 특별회원 기관)의 대표 (공공기관인 경우 관련자)를 위원으로 구성
- 간 사 : 온천협회 사무처장
  - ※ 협의회는 행정적·기술적 자문 등을 위해 학술위원회 위원장 또는 관계자에 대한 회의참석을 요구할 수 있음

### 3-3. 회의 소집

- 정기 회의 : 익년도 온천전문검사 수요에 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등 관리를 위하여 연말 또는 당해 연도 초에 소집
- 수시 회의 : 현안 또는 긴급사항의 발생이나 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협의회장이 소집

### 3-4. 회의록 작성·보관

- 간사는 정기·수시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10년 이상 보관

### 3-5. 의결의 효력

- 협의회 의결효력은 의사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함으로써 효력이 발생
- 긴급조치를 요하는 사항의 발생이나 신속한 회의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협의회장이 결정 후, 협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인을 받아야 함

#### 4-1. 학술위원회 설치·운영

-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의 감리·감독 및 기술자문 역할 수행
- 온천전문검사의 효율성 제고와 조사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세부 운영절차 등 제정·시행

※ 학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온천협회 정관으로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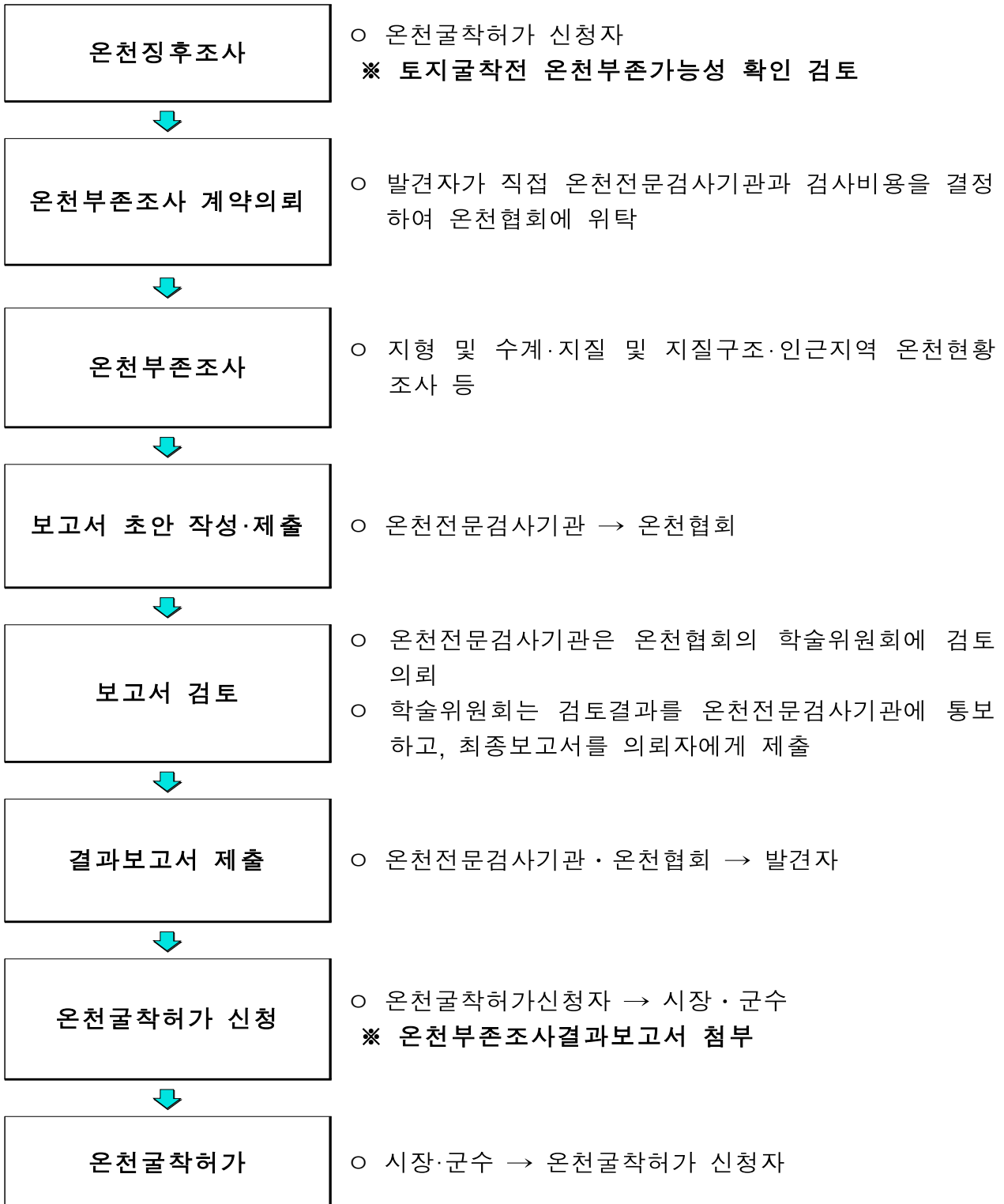
#### 4-2. 자료의 보존·관리

- 온천협회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및 각종 조사결과를 기재한 온천전문검사대장을 작성하여 10년 이상 보존·관리
  - 특히, 5년 주기 정기온천자원조사의 누락 및 지연 시행 방지를 위해 시기도래 6개월 전에 해당 지자체에 사전 통보
- 온천자원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등을 포함한 온천전문검사 결과는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에 활용

#### 4-3. 회계처리

- 온천전문검사 위탁에 따른 수입·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 계정과목으로 운영
-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온천전문검사 위탁운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단,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

## 5-1. 온천부존조사



## 5-2. 온천공검사

온천징후조사

- 온천굴착허가(토지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  
→ 시장·군수
- 굴착 및 시추 : 신청자 및 시공사



온천공검사 계약의뢰

-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이 직접 온천전문검사기관과 검사 비용을 결정하여 온천협회에 위탁



온천공 검사

- 지하수위관측, 물리검층, 단계양수시험, 성분분석 등
- ※ 온천협회, 관계공무원 입회·확인



보고서 초안 작성·제출

- 온천전문검사기관 → 온천협회



보고서 검토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의 학술위원회에 검토 의뢰
- 학술위원회는 검토결과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통보 하고, 최종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 온천전문검사기관·온천협회 →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온천발견 신고

- 온천발견신고서 제출  
: 신고자(토지소유권자) → 시장·군수  
- 온천공조사보고서 첨부
- ※ 보조공의 경우는 온천발견신고·수리절차 없음



온천발견신고 수리

- 당해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리 → 신고인(발견자)에게 수리사실 통지

### 5-3. 온천공영향조사

온천공영향여부 확인

- 기존공(온천공, 지하수공)과 신규공 수위영향정도
- 기존 온천공 또는 지하수공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인지 여부 등



온천공영향조사 계약

-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이 직접 온천전문검사기관과 검사 비용을 결정하여 온천협회에 위탁



온천공 영향조사

- 영향의 정도, 온천공검사, 적정 양수량 산정 등
- ※ 관계공무원 입회·확인



보고서 초안 작성·제출

- 온천전문검사기관 → 온천협회



보고서 검토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의 학술위원회에 검토 의뢰
- 학술위원회는 검토결과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통보 하고, 최종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제출



결과보고서 제출

- 온천전문검사기관·온천협회 → 온천발견신고자, 온천 굴착허가자 또는 민원제기인



온천발견신고 또는 온천보조공 등록

- 시장·군수

## 5-4. 온천자원 평가조사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 신청



온천자원평가조사 계약



온천자원평가조사



보고서 초안 작성·제출



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 제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변경신청,  
온천이용허가수량 조정

○ 온천우선이용권자, 시장·군수

○ 온천우선이용권자 등이 직접 온천전문검사기관과 검사 비용을 결정하여 온천협회에 위탁

○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적정 양수량 산정 등  
※ 관계공무원 입회·확인

○ 온천전문검사기관 → 온천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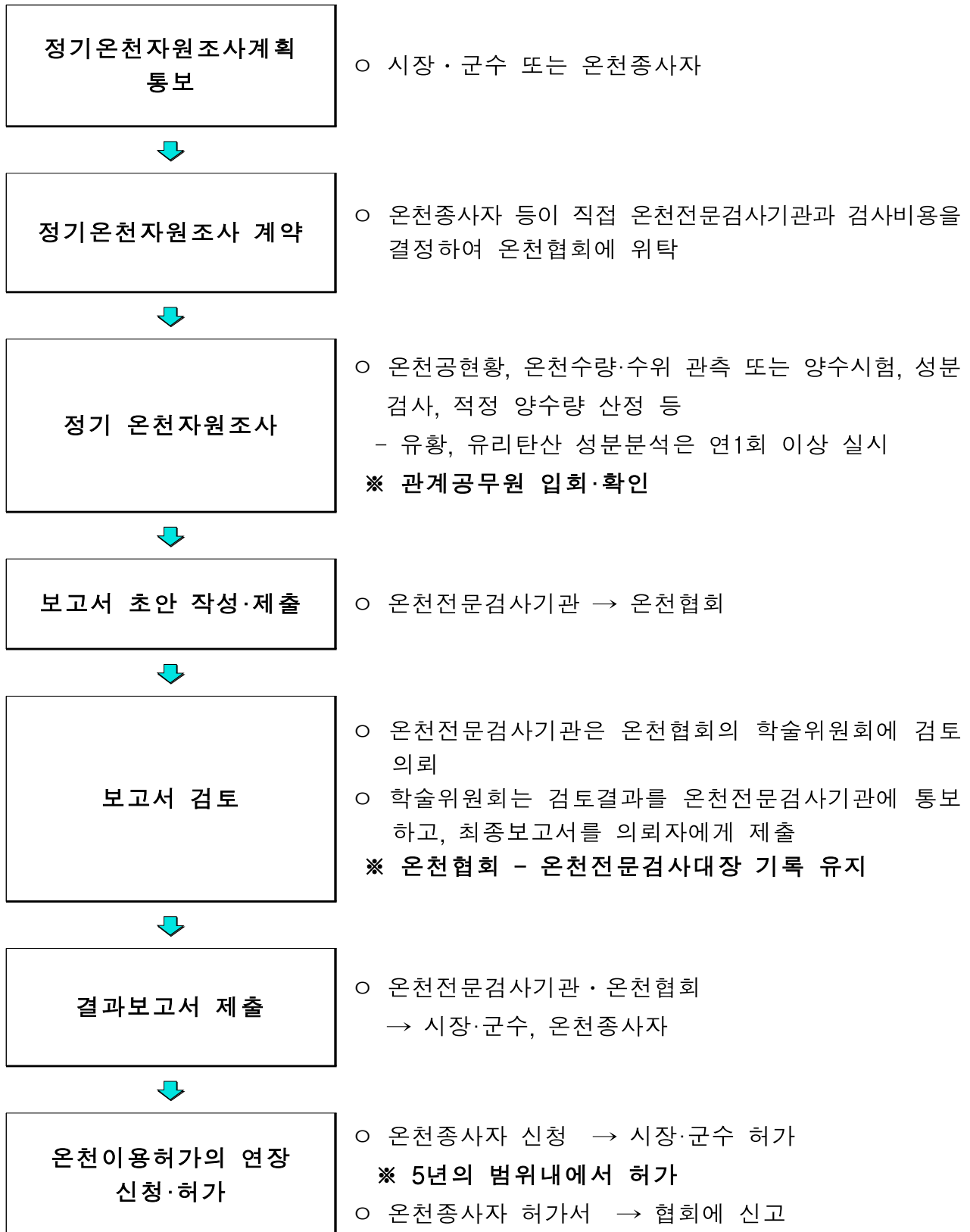
○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온천협회의 학술위원회에 검토 의뢰  
○ 학술위원회는 검토결과를 온천전문검사기관에 통보 하고, 최종보고서를 의뢰자에게 제출

○ 온천전문검사기관·온천협회 →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 시·도지사  
※ 온천이용허가량은 시장·군수가 조정

○ 온천우선이용권자 내용 → 협회에 신고

## 5-5. 정기온천자원조사



[별표 5]<개정 2010.8.11.>

❖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온천법시행규칙 제13조제3항관련)

1. 온천공 검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 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표 1의2]<개정 2016.12.15.>

**❖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

(온천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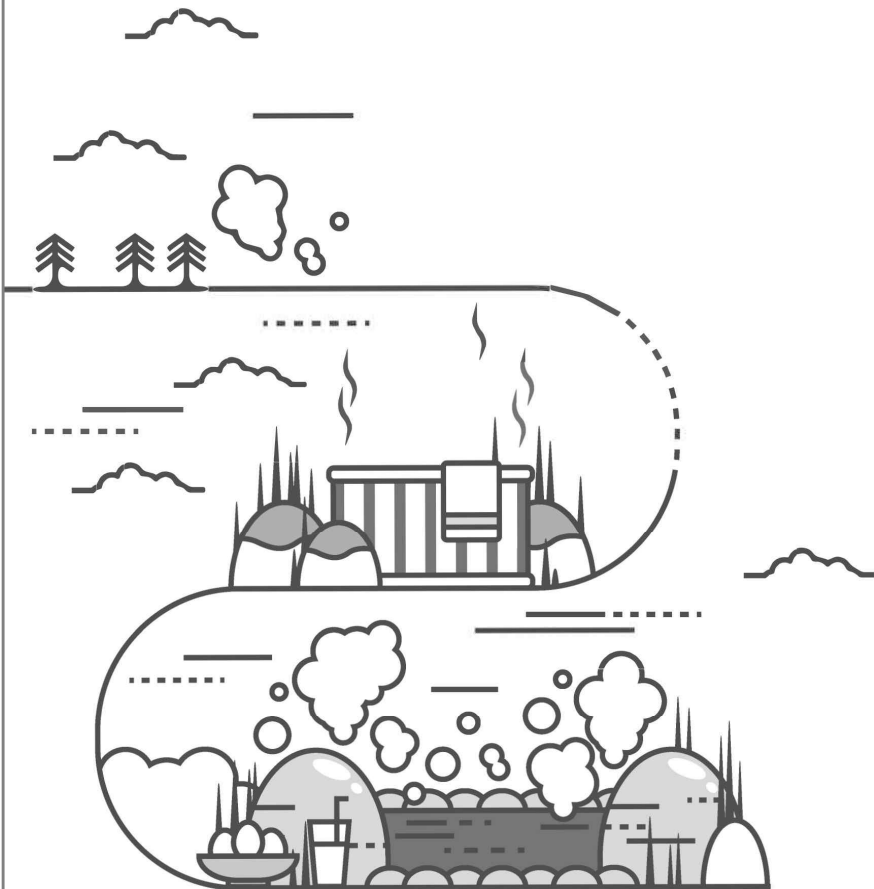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4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5.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5호	영업정지 6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 제 7조 제 4항 제 6호	등록취소	

**참고 3****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현황**

연번	기관명	소재지	비고
1	한국농어촌공사	전남 나주시	061-338-5775
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대전 유성구	042-868-3085
3	한국중앙온천연구소	서울 금천구	02-2027-3470
4	(주)하나 엔지니어링	경기 안양시	031-345-0507
5	(주)한국건설엔지니어링	경기 광명시	02-894-2472
6	(주)세기종합기술공사	세종시	044-863-1025
7	중앙컨설턴트(주)	서울 강남구	02-2156-6031
8	(주)옥수개발	서울 송파구	02-412-8944
9	(주)진산	제주도	064-756-8868
10	(주)지오엠	경남 김해시	055-327-2709

## VII. 온천법령집

### 1.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 목 차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 171	제1조(목적) ..... 171	제1조(목적) ..... 171
제2조(정의) ..... 171	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 ..... 171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172		
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 172		
제4조(삭제) ..... 173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 ..... 173	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 ... 173	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 ..... 173
		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 ..... 174
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 175	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 ..... 175	제3조의2 ..... 175
	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 ..... 176	
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 177	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 177	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 ..... 177
제8조(적용의 배제) ..... 181		제4조의2 ..... 178
제9조(보양온천의 지정) ..... 182		
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 183	제6조의2(온천도시의 지정) ..... 183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 185	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 ..... 185	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 ..... 186
	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 ..... 187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의 변경) ..... 188	
	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 ..... 191	
	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 ..... 191	
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 191	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 ..... 192	
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 ..... 198		
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 ..... 199		
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 ..... 200		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 200
제12조(굴착허가) ..... 200	제13조(굴착허가 신청) ..... 200	제7조(굴착허가신청 등) ..... 200
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 ..... 204		
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 ..... 205	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 ..... 205	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 206
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 ..... 207	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 ..... 207	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 ..... 207
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 208	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 ..... 208	제8조의2(수문관측시설) ..... 207
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 ..... 209	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 ..... 209	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 ..... 208
	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 ..... 212	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 ..... 209
	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 ..... 212	제10조의2(온천표시) ..... 212
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 213		
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 ..... 214		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 ..... 214
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 214		
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 215		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 ..... 215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 ..... 216		
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 ..... 217		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 ..... 217
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 ..... 218		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 ..... 220
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 ..... 219		제14조(삭제) ..... 221
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221	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 ..... 222	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 ..... 221
	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 ..... 223	제16조(삭제) ..... 222
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 222		제17조(허가증의 교부) ..... 222
제25조(출입검사 등) ..... 223		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 ..... 224
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 ..... 224		제18조의2(삭제) ..... 224
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 225		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 ..... 224
	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 225	
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 ..... 226		
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 ..... 226		
제29조(시정요구) ..... 226		
제30조(청문) ..... 227		
제31조(수수료) ..... 227	제22조(수수료) ..... 227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 227		
제32조(벌칙) ..... 228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229	제20조(규제의 재검토) ..... 229
제33조(벌칙) ..... 228		
제34조(벌칙) ..... 229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제35조(벌칙) ..... 229 제36조(양벌규정) ..... 229 제37조(과태료) ..... 230		
부 칙 ..... 232	부 칙 ..... 232	부 칙 ..... 232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1조(목적)</b> 이 법은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써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li> <li>2. “온천우선이용권자”란 온천발견신고가 수리(受理)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공(溫泉孔)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한다.</li> <li>3. “온천종사자”란 온천을 공중(公衆)의 목욕용이나 음용(飲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li> <li>4. “온천전문검사기관”이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li> </ol>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조(목적)</b> 이 영은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b>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성분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질산성질소(NO<sub>3</sub>-N)는 10mg/L 이하일 것</li> <li>2. 테트라클로로에틸렌(C<sub>2</sub>Cl<sub>4</sub>)은 0.01mg/L 이하일 것</li> <li>3. 트리클로로에틸렌(C<sub>2</sub>HCl<sub>3</sub>)은 0.03mg/L 이하일 것</li> </ol>	<p><b>제1조(목적)</b> 이 규칙은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및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자치단체는 온천발전신고를 수리한 후에는 해당 온천의 원활한 개발과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온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3조의2(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 및 온천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온천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보전, 온천문화 창달 및 관련 산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li> <li>2. 온천 개발계획·관리·보전 등의 종합대책 수</li> </ol>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           립에 관한 사항            3. 보양온천(保養溫泉)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음용화 추진과 미용 관련 등 온천산업의 발전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온천수 재활용에 관한 대책 수립과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온천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온천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7. 16.&gt;            [전문개정 2011. 5. 30.]  <b>제4조</b> 삭제 &lt;2010. 2. 4.&gt;  <b>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등)</b>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승인을         </p>	<p> <b>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 및 지정 절차)</b>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p>	<p> <b>제2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 신청)</b> ① 영 제3조         </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을 받아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3. 7. 16.&gt;</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온천개발을 위하여 토지 용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원(溫泉源)이 고갈된 경우</li> <li>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 또는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li> <li>4.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④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p>	<p>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규모 온천개발에 관한 계획</li> <li>2. 예정구역 안의 토지조서</li> <li>3. 예정구역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li> <li>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에 대한 의견서</li> </ol> <p>③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적정 양수량, 개발가능성 등에 비추어 소규모 온천개발에 적합한 지역인지 여부</li> </ol>	<p>제2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및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같다.</p> <p>[전문개정 2010. 8. 11.]</p> <p><b>제3조(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고시 등)</b> ①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와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및 해제에 관한 고시는 각각 관보 또는 공보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명칭·위치·범위 및 면적</li> <li>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li> <li>3.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가 명시된 지형도면</li> </ol>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장할 수 있다.</p> <p>⑤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p> <p>⑥ 시장·군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6조(온천공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b> ① 시장·군수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그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5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이하 “온천공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시·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지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p>	<p>2.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p> <p>3.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p> <p>4.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p> <p><b>제4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승인 신청)</b>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p>	<p>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lt;개정 2020. 6. 23.&gt;</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해 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내용을 30일 이상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lt;개정 2020. 6. 23.&gt;</p> <p>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지형도면의 작성절차·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0. 8. 11.]</p> <p><b>제3조의2</b> [종전 제3조의2는 제5조로 이동 &lt;2007. 9. 18.&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필요성의 인정을 말한다)을 하면 시장·군수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7. 16.&gt; [전문개정 2011. 5. 30.]</p>	<p>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구역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p><b>제5조(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등)</b>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은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온천공보호구역의 개</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7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b> ①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제2항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하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인정서를 말한다)와 법인이 아닌 자의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p>	<p>발예정지 안에서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소유토지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야 한다. &lt;개정 2012. 4. 10.&gt;</p> <p>1. 도시·군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 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p><b>제6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b> ① 법 제5조제1항 전단 및 제6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한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후단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검사의 경우에 한정한다.</p>	<p><b>제4조(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b>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의3서식과 같다.</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전문인력 및 장비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관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인 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gt;</p> <p>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온천분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5. 7. 20.&gt;</p> <p>1. 전문인력</p> <p>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p> <p>1) 지질 및 지반기술사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賦存量) 조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2) 응용지질·지구물리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 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박사학위의 경우 5년, 석사학위의 경우 7 년, 학사학위·전문학사학위의 경우 10년</p>	<p>1. 온천공의 위치 및 현황</p> <p>2.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이 1천톤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 2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하고, 1천톤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3개의 온천공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p> <p>3. 온천공의 수위 변동 상황</p> <p>4. 온천수의 용출 온도 및 성분</p> <p>②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1일 적정 양수량을 검사할 때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온천공 외의 온천 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이 150톤 이상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p>	<p>1.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등록대장예의 등재 및 관보예의 게재</p> <p>2.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p> <p>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온천전문검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15일 이내에 이미 교부받아 사용 중인 등록증 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서류를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1. 전문인력</p> <p>2. 장비</p> <p>3.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p> <p>④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lt;개정 2020. 6. 23.&gt;</p> <p>[전문개정 2010. 8. 11.]</p> <p><b>제4조의2</b> [중전 제4조의2는 제6조로 이동 &lt;2007. 9. 18.&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이상 종사한 사람</p> <p>3) 온천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p> <p>나. 응용지질 또는 지구물리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공 조사 또는 온천 부존량 조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2명 이상</p> <p>다. 화학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온천 또는 지하수 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1명 이상</p> <p>2. 장비</p> <p>가. 물리탐사 및 검층장비</p> <p>나. 수소이온농도, 수온, 전기전도도, 총용해물질(TDS, Total Dissolved Solids) 등의 검사를 위한 간이수질측정장비(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p> <p>다. 수위측정장비</p> <p>라. 수량측정장비</p> <p>마. 야외수질분석장비</p> <p>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7. 16., 2014. 11. 19., 2017. 7. 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li> </ol>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li> <li>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li> <li>3.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li> <li>5.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li> <li>6.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li> </ol>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온천전문검</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사기관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gt;</p> <p>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온천전문 검사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 온천검사 실적 및 검사 내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gt;</p> <p>⑦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gt;</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8조(적용의 배제)</b>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온천원 보호지구(이하 “온천원보호지구”라 한다) 및 온천공보호구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lt;개정 2013. 7. 16.&gt;</p> <p>[전문개정 2011. 5. 30.]</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9조(보양온천의 지정)</b> ① 시·도지사는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이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이용시설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양온천을 개발·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자금을 융자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③ 제1항에 따라 보양온천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양온천의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해당 보양온천도 그 범위가 변경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p> <p>1.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가 변경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2. 제5조제1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p> <p>3. 제5조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p> <p>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해제, 시설기준 및 보양온천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9조의2(온천도시의 지정)</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천지역을 온천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p> <p>② 온천도시의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온천도시에 대하여 온천의 전통성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온천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 관련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6조의2(온천도시의 지정)</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온천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온천지역에 위치한 온천의 온도·성분 등이 우수할 것</li> <li>2. 해당 온천지역에서 온천 관련 지역축제 등 온천관광을 활성화한 노력이 우수할 것</li> <li>3.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이용현황 및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온천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li> <li>4. 해당 온천지역의 온천 관련 시설현황 및 관련 자원과의 연계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li> <li>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li> </ol> <p>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온천도시의 지정을 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2항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li> <li>2. 제4항 각 호에 따른 온천도시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i> <li>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온천도시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b> ①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p>	<p>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p> <p>⑦ 제6항에 따라 온천도시의 지정 또는 그 해제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p> <p>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천도시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20. 6. 23.]</p> <p><b>제7조(개발계획의 수립 등)</b>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여 온천개발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말한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적인 온천수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온천공이 있는 토지</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lt;개정 2013. 7. 16.&gt;</p> <p>②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변 여건, 수요 전망 및 개발 방향</li> <li>2. 온천자원의 개발·이용·관리·보호 및 기존 온천원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li> <li>3.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li> <li>4. 폐기물·하수 처리 등 주변 환경 정비 및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li> <li>5. 그 밖에 온천의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③ 개발계획의 대상 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자연공원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공원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p>	<p>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온천이용시설에 대한 온천공별 책임급수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lt;개정 2017. 2. 13.&gt;</p> <p>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리적 여건</li> <li>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li> <li>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li> <li>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li> <li>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li> <li>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li> </ol> <p>④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p>	<p><b>제5조(온천개발계획의 승인·변경신청)</b> ① 영 제7조 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p> <p>② 영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p> <p>③ 영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에는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축척 2만5천분의 1로 작성된 예정지구 표시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8. 11.]</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른 유치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개발계획, 공원계획, 관광지등 조성계획,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맞게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6. 3.&gt;</p>	<p>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li> <li>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 등의 배치</li> <li>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li> <li>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li> <li>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li> </ol> <p><b>제8조(온천우선이용권자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 등)</b> ①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승인신청서에 제7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이내에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제출한 승인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승인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인신청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은 개발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p>③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개발계획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서는 아니 된다.</p> <p><b>제9조(개발계획의 변경)</b> ①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p> <p>1.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2. 온천이용시설의 증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p> <p>3. 온천공의 1일 적정 양수량의 감소나 천재지변 등으로 온천개발면적 또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 축소가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당시의 여건에 현저한 변동이 있어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변경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신청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온천우선이용권자(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④ 시장·군수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사항에 맞게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t;개정 2013. 7. 16.&gt;</p>	<p>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예정지구 안의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리적 여건</li> <li>2. 변경하려는 사유</li> <li>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li> <li>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li> <li>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li> <li>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li> </ol> <p>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p>⑤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온천개발 면적, 개발계획에 따른 예정지구 또는 온천원보호지구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해당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를 말한다.</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원이 고갈된 경우</li> <li>2.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li> <li>3. 개발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환경이나 미관을 크게 해치는 경우</li> <li>4.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승인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li> </ol> <p>⑥ 제5항제4호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⑦ 시·도지사는 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자원의 변동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또는 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0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b> ①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p>	<p><b>제10조(개발계획의 승인 취소 요청)</b>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와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개발계획 승인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법 제10조제5항제1호의 사유로 개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제1항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p> <p><b>제11조(온천개발자문위원회)</b> ① 법 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등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온천개발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lt;개정 2017. 2. 13.&gt;</p> <p>②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0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결정·승인·지정·인가·면허·협의·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5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3. 7. 16., 2014. 1. 14., 2014. 6. 3., 2016. 1. 19., 2016. 12. 27., 2017. 4. 18.&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제29조에 따른 협의</li> <li>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li> <li>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li> <li>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li> </ol>	<p>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온천개발자문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lt;신설 2017. 12. 29.&gt;</p> <p><b>제12조(인·허가 등의 의제)</b> 법 제10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p> <p>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p> <p>6.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p> <p>7.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p> <p>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p> <p>9.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p> <p>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p> <p>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p> <p>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p> <p>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p> <p>14.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 석채취허가</p> <p>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p> <p>16.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p> <p>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p> <p>18. 「자연공원법」 제13조에 따른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허가(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립공원위원회 또는 군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p> <p>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2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p> <p>2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p> <p>2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p> <p>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p> <p>2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p> <p>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심사 및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및 완료의 신고</p> <p>26.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p> <p>2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p> <p>28.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p> <p>2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등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6. 12. 2.&gt;</p> <p>④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개발계획 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취소할 때에는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p> <p>⑤ 시·도지사가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⑥ 제4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가 지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그 지역이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면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0조의3(전략환경영향평가 등)</b> 시·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온천개발로 인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7. 21., 2013. 7.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li> <li>2. 온천개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개발계획 승인 전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li> </ol> <p>[본조신설 2010. 2. 4.] [제목개정 2011. 7. 21.]</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10조의4(개발사업의 시행)</b>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승인을 받은 시장·군수는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용수권(用水權)이나 그 밖의 농지개량시설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 3.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li> <li>2. 토지에 정착한 입목(立木)이나 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li> <li>3. 물 사용에 관한 권리</li> <li>4. 토지에 속한 토석(土石) 또는 모래와 조약돌</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군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행기간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수용 등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목록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 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p> <p>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온천우선이용권자는 개발사업과 그 운영에 관련되는 도로, 전기, 상수도·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우선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⑥ 개발계획으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 처분,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등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30조 및 제131조를 준용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b> 개발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08. 2. 29., 2010. 2.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b>제12조(굴착허가)</b> ①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p>	<p><b>제13조(굴착허가 신청)</b>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p>	<p><b>제6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b> 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lt;개정 2007. 9. 18.&gt; [본조신설 2001. 6. 27.]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제4조의2에서 이동 &lt;2007. 9. 18.&gt;]</p> <p><b>제7조(굴착허가신청 등)</b>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영 제13조</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온천공의 지름을 늘이기 위하여 용출구(湧出口)를 확대하거나 그 깊이를 깊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굴착하려는 토지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거나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를 받은</p>	<p>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자로 한정한다)</li> <li>2. 굴착 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li> <li>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li> <li>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 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li> </ol>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lt;신설 2017. 2.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li> <li>2. 법 제12조제4항제3호가목에 따라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li> </ol>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p>	<p>제4항에 따른 토지굴착 유효기간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p> <p>②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자로 한다. 이 경우 동의를 절차와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lt;신설 2013. 7.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를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li> <li>2. 제3항에 따라 실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 결과 해당 토지에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li> <li>3. 굴착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기존 온천공과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제1항 후단에 따라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온천수 추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굴착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li> <li>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li> </ul> </li> </ol>	<p>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일 현재 굴착할 토지에 대한 신청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p>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20. 6.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 소유 토지를 굴착하는자로 한정한다)</li> <li>2. 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li> <li>3. 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li> <li>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 결과보고서</li> </ol> <p>③ 제2항에 따른 굴착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일 현재 굴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신고인의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lt;개정 2020. 6. 23.&gt;</p> <p>④ 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0. 8. 11.]</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개발제한구역,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또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p> <p>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p> <p>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p>⑤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토지를 굴착하던 중 온천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3항의 온천 부존가능성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온천굴착신고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gt;</p> <p>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허가받은 굴착공사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이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lt;개정 2013. 7. 16.&gt;</p>	<p>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토지굴착을 하려는 자는 지번, 지목, 면적,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이 적힌 토지굴착동의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에 대한 동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p>⑤ 법 제12조제6항 단서에 따라 토지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토지 소유권자의 토지굴착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굴착동</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⑦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7. 16.&gt;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2조의2(이행보증금의 예치)</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거나 온천을 이용 또는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으려는 자</li> <li>2.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li> <li>3.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을 신고하려는 자</li> </ol> <p>② 이행보증금의 금액, 예치의 시기·방법·절차 및 이행보증금의 반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p>	<p>의서의 동의기간은 연장하려는 허가의 유효기간 이상이어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13조(원상회복 의무 등)</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7.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굴착허가를 받아 토지를 굴착하였으나 온천이 발견되지 아니하거나 굴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li> <li>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li> <li>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거나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li> </ol> <p>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를 굴착한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p> <p>③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13. 7. 16.&gt;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4조(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등)</b></p> <p>①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거나 법 제21조에 따라 온천발견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 또는 신고 시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1. 1. 17., 2015. 6. 30., 2016. 5. 3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li> <li>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li> <li>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li> <li>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li> </ul> </li> <li>「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li> <li>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li> <li>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li> <li>다.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li> <li>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li> </ul> </li> </ol>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마.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바.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조합</p> <p>4. 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회사나 채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에금증서</p>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p> <p>②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③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6조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경우 : 온천이용허가일부부터 허가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p> <p>2. 법 제21조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의 경우 : 온천발견신고일부부터 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p> <p>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이행보</p>	<p><b>제7조의2(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b> ①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lt;개정 2010. 8. 11.&gt;</p> <p>1. 온천공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 비용</p> <p>2. 그 밖에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p> <p>②제1항에 따른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 비용 등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의 조</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14조(동력장치 설치의 허가)</b> ① 온천의 채수(採水)를 위하여 동력장치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치허가를 받은 동력장치와 같은 성능의 장치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는 동력장치의 설치가 다른 온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동력장치를</p>	<p>증금의 예치기간이 지난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p>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회복의무자에게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회복의무자에게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p><b>제15조(동력장치의 설치 및 허가 신청)</b>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동력장치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p>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lt;개정 2010. 8. 11., 2020. 6. 23.&gt;</p> <p>[본조신설 2007. 9. 18.]</p> <p><b>제8조(동력장치의 설치허가신청)</b> 영 제15조에 따른 동력장치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lt;개정 2010. 8. 11.&gt;</p> <p>[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제6조에서 이동 &lt;2007. 9. 18.&gt;]</p> <p><b>제8조의2(수문관측시설)</b> ①법 제14조제3항에서 “행</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설치할 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5조(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b> ① 누구든지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는 지하수를 개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p>	<p><b>제16조(지하수 개발 허가)</b>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할 수</p>	<p>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수문관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lt;개정 2007. 9. 18., 2010.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위측정관(안쪽 지름이 30밀리미터 이상인 내열·내압성관을 말한다) 또는 수위측정장치</li> <li>2. 유량계</li> <li>3. 온도계</li> </ol> <p>②온천원이 같은 다른 온천공에 설치된 수문관측시설을 통해 수위등의 측정이 가능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lt;신설 1999. 2. 5., 2010. 8. 11., 2020. 6. 23.&gt;</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은 온천공으로부터 1미터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lt;신설 2001. 6. 27.&gt;</p> <p>[제7조에서 이동 &lt;2007. 9. 18.&gt;]</p> <p><b>제9조(지하수개발 허가신청)</b> 법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허가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lt;개정 2007. 9. 18.&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가정 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시장·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솟아나게 할 목적 외의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이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6조(온천의 이용허가)</b> ① 공공의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3. 7. 16.&gt;</p> <p>② 온천은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공중의 음용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다만,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이용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개발</p>	<p>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lt;개정 2017. 2.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시설의 업무용</li> <li>2. 농업용수 공급용</li> <li>3.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4. 1일 양수량을 기준으로 30톤 이내로 사용하려는 경우</li> </ol> <p><b>제17조(온천의 이용허가)</b>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욕용으로 허가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p>	<p>[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제8조에서 이동 &lt;2007. 9. 18.&gt;]</p> <p><b>제10조(온천의 이용허가신청)</b>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lt;개정 2010. 8. 11.&gt;</p> <p>[종전 제10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제9조에서 이동 &lt;2007. 9. 18.&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계획에 따라 온천을 난방 및 에너지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7. 1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청인이 해당 온천의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온천우선이용권자와 온천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li> <li>2.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외의 지역에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 외의 지역에 대하여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가하여야 하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예정지 안에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li> <li>3. 온천수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성분기준</li> <li>나. 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온천의</li> </ol> </li> </ol>	<p>여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이용계획서</li> <li>2. 법 제19조에 따른 수질검사서 또는 그 사본</li> <li>3. 온천공 현황(양수시험 결과를 포함한다)</li> <li>4. 온천의 공급계약서 또는 그 사본(이용허가 신청자와 온천공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li> </ol> <p>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의 양수량은 온천전문기관이 검사한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양으로 한다.</p> <p>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법 제10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온천의 이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2. 1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우선이용권자일 것</li> <li>2.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li> </ol>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이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기준</p> <p>4. 다음 각 목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온천이 고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p> <p>가.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5조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p> <p>나. 온천원보호지구 내의 온천에 대한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검사보고서</p> <p>다. 기존 온천공에 부수하여 이용하려는 온천공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p> <p>5. 제4호 각 목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揚水量)을 초과하여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p> <p>6.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p>	<p>된 지역 또는 지정 예정지 안에 목욕장·숙박시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해당되는 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등 기존의 온천이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일 것</p> <p>④ 제3항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1일 적정 양수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p> <p>⑤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시설 및 공중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lt;개정 2020. 6.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에 따른 양어시설</li> <li>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에 따른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li> <li>3.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제조시설</li> <li>4.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반의약품의 제조시설</li> <li>5.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li> </ol>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④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를 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온천 표시를 사용할 수 없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gt;</p> <p>⑤ 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24조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연장기간을 결정하거나 허가량을 조정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라 이용을 허가할 수 있는 온천수의 수량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온천이용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lt;신설 2013. 7. 16.&gt; [전문개정 2011. 5. 30.]</p>	<p>숙박업의 시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유원 시설업의 시설</p> <p>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및 수영장 시설</p> <p>7.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p> <p>8.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p> <p><b>제18조(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 금지)</b>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 또는 과장의 표시·광고행위는 온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p> <p><b>제19조(허가를 위한 조사 의뢰)</b>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lt;개정 2017. 2. 13.&gt;</p>	<p><b>제10조의2(온천표시)</b>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온천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lt;개정 2001. 6. 27., 2010. 8. 11.&gt;</p> <p>[제10조에서 이동 &lt;2007. 9. 18.&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16조의2(온천이용허가 시 인·허가등 의제) ①</b>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li> <li>2. 「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li> <li>3.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li> <li>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li> <li>5.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른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시장·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항이 포함되어 있는 온천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lt;개정 2016. 12. 2.&gt;</p> <p>④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7조(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등)</b>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② 제1항에 따른 목욕용 온천수의 수질검사 방법과 그 밖에 수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8조(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b> 시장·군수는 온천의 이용으로 인하여 보건상·위생상 위해가</p>		<p><b>제11조(온천의 수질기준 등)</b>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의 목욕용으로 제공되는 온천의 수질기준과 검사 방법에 대하여서는 별표 3을 적용한다. &lt;개정 2001. 6. 27., 2007. 9. 18.&gt;</p> <p>[본조신설 2000. 6. 16.]</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있다고 인정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온천종사자 또는 해당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 보건상·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19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b> ① 온천종사자(산업용이나 난방용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하고 성분검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성분의 경우에는 성분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은</p>		<p><b>제12조(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등)</b>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특정성분의 검사주기는 별표 4와 같다. &lt;개정 2010. 8. 11.&gt;</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을 자(이하 “검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lt;개정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gt;</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검사대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전자문서</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자는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禁忌症), 목욕용 또는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온천이용시설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④ 시장·군수는 수질 및 성분 검사 결과 온천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재검사결과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0조(온천의 공동급수)</b> ① 시장·군수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공동급수를 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격요건, 공동급수에 따른 사용료, 그 밖에 공동급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 &lt;개정 2001. 6. 27., 2005. 2. 11., 2010. 8. 11., 2020. 6. 23.&gt;</p> <p>④ 법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온천에 포함된 성분의 치료효과 등 온천의 이용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lt;신설 2010. 8. 11.,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21조(온천발견의 신고 등)</b> ①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온천을 발견한 자는 온천의 위치·깊이, 온천공의 지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② 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의 수온·수량·수질 등에 대하여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검사 결과 그 온천을 개발·이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③ 온천발견을 신고한 자는 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7. 16.&gt;</p> <p>④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lt;개정 2013. 7. 16., 2015. 7. 20.&gt;</p>		<p><b>제13조(온천발견신고의 수리등)</b>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별지 제10호서식에 온천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적현황측량성과도와 제3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lt;개정 2010. 8. 11., 2020. 6.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공이 발견된 위치</li> <li>2. 발견경위</li> <li>3. 발견내용: 온천공의 개수, 지름과 깊이, 온도 및 1일 적정 양수량</li> <li>4. 발견지역의 여건</li> </ol> <p>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lt;개정 2000. 6. 16., 2001. 6. 27.,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써 그 성분이 영 제2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li> <li>2.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일 것. 이 경우 1일 적정 양수량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하여</li> </ol>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1.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후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p> <p>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p> <p>3. 온천발견신고의 수리 후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승인신청 또는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지정 또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말한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p> <p>4. 제5조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p> <p>5. 제10조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그 승인이 취소된 경우</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2조(온천발견신고 수리의 제한 등)</b> ①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p> <p>1. 기존 온천공과 발견신고공(發見申告孔)의 수평거리가 1천미터 이내인 경우</p> <p>2.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자연환경보전법」에</p>		<p>산정한다.</p> <p>가. 1일 적정 양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수에 따른 수위강하 범위는 48시간 동안 양수하였을 경우 기준수위로부터 1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p> <p>나. 1일 적정양수량은 단계양수시험 후 기준수위로부터의 수위강하량의 95%의 수위회복률을 고려하여 산정한다.</p> <p>3.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유무</p> <p>4.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등 공익상 피해여부</p> <p>5. 온천 수요전망 및 주변여건</p> <p>6. 온천발견신고자가 발견신고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p> <p>③ 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는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온천전문검사기관이 별표 5에 따라 작성한 온천공검사보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검사대상 온천공의 붕괴 등으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때에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다른 생태·경관보전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시계획사업 등 공공사업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3조(온천우선이용권자의 권리 등)</b> ①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에게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에서 토지를 굴착하게 하거나 온천의 이용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온천이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를 용자·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온천우선이용권자는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온천발견신고를 하려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기한을 늦추어 온천공검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lt;개정 2010. 8. 11., 2020. 6. 23.&gt;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수리된 신고인이 당해 온천공이 있는 토지 및 온천개발예정지역내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온천개발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lt;신설 1999. 2. 5.,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gt;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온천원이 같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때에는 온천발견신고서의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온천공검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고 그 다음 순위이하의 자의 온천발견신고서는 이를 지체 없이 반려해야 한다. 다만,</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검사결과 그 신고공이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선순위자의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하고 그 다음 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해 검사한 후 온천발견신고서를 수리 또는 반려해야 한다. &lt;신설 1999. 2. 5.,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gt;</p> <p>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온천우선이용권자로부터 온천개발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굴착허가 또는 온천의 우선이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온천공보호구역 또는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허가해야 한다. &lt;신설 2001. 6. 27.,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gt;</p> <p><b>제13조의2(온천발견신고의 반려)</b>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lt;개정 2003. 12. 30.,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li> <li>2. 삭제 &lt;2007. 9. 18.&gt;</li> </ol>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24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b> ① 시장·군수는 온천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온천자원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온천자원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② 시장·군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을 조사하고 온천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③ 온천자원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시장·군수는 온천자원 조사가 실시될 때까지 새로운 온천에 대한 발견신고를 수리할 수 없으며 온천이용허가나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등을 할 수 없다.</p> <p>④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 조사를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3. 온천발견신고자가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고 등의 내용 및 절차 등에 위반하여 온천을 발견한 경우 [본조신설 2001. 6. 27.]</p> <p><b>제14조</b> 삭제 &lt;2007. 9. 18.&gt;</p> <p><b>제15조(온천자원의 보전·관리)</b>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는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및 수질·성분의 변화등 온천의 특성을 대상으로 온천이용허가일부부터 5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온천원의 부존량과 부존범위를 포함시킬 수 있다. &lt;개정 1999. 2. 5., 2001. 6. 27., 2007. 9. 18.&gt;</p> <p>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조사결과 온천자원의 고갈가능성이 있거나 오염으로 인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lt;개정 1999. 2. 5., 2010.</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24조의2(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온천의 계획적·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자료와 그 밖에 온천수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천관리 정보체계</p>	<p><b>제20조(온천자원의 관측)</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온천자원 및 수위변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별로 하나 이상의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온천자원 관측시설을 통하여 온천의 수위 변동, 온천수 이용량, 온천수의 온도 등을 상시 관측하여</p>	<p>8. 11., 2020. 6. 23.)</p> <p>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lt;개정 2007. 9. 18.&gt;</p> <p>④ 삭제 &lt;2007. 9. 18.&gt;</p> <p><b>제16조</b> 삭제 &lt;1999. 2. 5.&gt;</p> <p><b>제17조(허가증의 교부)</b>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lt;개정 2007. 9. 18., 2010. 8. 11., 2020. 6. 23.&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를 마련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③ 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 정보체계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5조(출입검사 등)</b> ①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온천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의 온도</li> <li>2. 온천의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여부</li> <li>3. 온천이용 허가량의 초과 사용 여부</li> <li>4. 온천이용 배관시설 상태</li> </ol>	<p>기록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b>제20조의2(온천자원 관측자료 등의 제공)</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기록 및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p> <p>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자료</li> <li>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온천관리대장</li> </ol> <p>[본조신설 2020. 6. 23.]</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5. 온천이용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 여부                      6. 온천이용허가 시 준수사항 이행 여부                      7. 그 밖에 온천이용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6조(온천종사자 교육)</b> ①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제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을 실시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b>제18조(관계공무원 출입증표)</b>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lt;개정 2007. 9. 18.&gt;</p> <p><b>제18조의2</b> 삭제 &lt;2010. 8. 11.&gt;</p> <p><b>제19조(온천종사자 교육)</b>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시간은 연간 4시간으로 하며, 그 밖에 교육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                      [전문개정 2010. 8. 11.]</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의 위생교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b> ① 온천종사자는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 유지관리 및 온천종사자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를 설립할 때에는 온천종사자 20명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④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성립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⑤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1조(정관의 기재사항 등)</b>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온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설립목적</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27조의2(협회의 사업 등)</b>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li> <li>2.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감독</li> <li>3.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li> <li>4.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온천과 관련하여 위탁하는 조사·연구사업</li> </ol> <p>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에 이 법에 따른 사업의 위탁으로 사용되는 경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8조(대도시에 관한 특례)</b> 제5조, 제9조 및 제10조를 적용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본다. &lt;개정 2013. 7. 16.&gt; [전문개정 2011. 5. 30.]</p> <p><b>제29조(시정요구)</b>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 법에 따른 승인·신고수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명칭</li> <li>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li> <li>4. 사업내용</li> <li>5. 회원의 자격</li> <li>6. 임원의 정수·임기 및 선출방법</li> <li>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li> <li>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li> <li>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li> <li>10. 협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li> <li>11. 정관의 변경절차</li> </ol> <p>②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에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허가를 할 때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lt;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gt;</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30조(청문)</b>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의 취소</li> <li>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의 취소</li> </ol>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31조(수수료)</b> 제12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나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b>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lt;개정 2017. 7. 26.&gt;</p>	<p><b>제22조(수수료)</b>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 또는 성분검사가 협회에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 공당 6만원</li> <li>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온천의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 공당 3만원</li> <li>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동력장치의 설치허가 : 개소당 3만원</li> </ol>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1. 제7조에 따른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 등</p> <p>2. 제16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p> <p>3. 제20조에 따른 온천의 공동급수</p> <p>4. 제37조에 따른 과태료</p> <p>[본조신설 2015. 7. 20.]</p> <p><b>제32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0. 2. 4., 2011. 5. 30., 2013. 7. 16., 2014. 10. 15.&gt;</p> <p>1. 제12조제1항에 따른 굴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온천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p> <p>2.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온천을 이용한 자</p> <p>3. 제9조제3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p> <p>4. 제21조제1항에 따른 온천발견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p> <p><b>제33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3. 7. 16., 2014. 10. 15.&gt;</p>	<p>4. 동력장치의 변경허가 : 개소당 1만5천원</p> <p>5.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 건당 10만원</p> <p>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건당 2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수질검사항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p> <p>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분검사: 건당 2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성분검사에 드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p> <p>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수수료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기준을 정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lt;개정 2017. 2. 13.&gt;</p> <p>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lt;개정 2017. 2. 13.&gt;</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1.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장치를 설치한 자</p> <p>2.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개발한 자</p> <p>3. 제16조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량을 초과하여 온천수를 사용한 자</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34조(벌칙)</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t;개정 2011. 5. 30.&gt;</p> <p>1.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p> <p>2.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p> <p>3.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자</p> <p>4. 삭제 &lt;2010. 2. 4.&gt;</p> <p><b>제35조(벌칙)</b>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p><b>제36조(양벌규정)</b>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p>	<p><b>제23조(규제의 재검토)</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7. 7. 26.&gt;</p> <p>1. 제13조에 따른 굴착허가: 2014년 1월 1일</p> <p>2. 제16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 허가: 2014년 1월 1일</p> <p>3. 제17조에 따른 온천의 이용허가: 2014년 1월 1일</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 12. 9., 2017. 7. 26.&gt;</p> <p>1. 제5조에 따른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2015년 1월 1일</p> <p>2. 제14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 2015년 1월 1일</p> <p>3. 제18조에 따른 온천과 관련된 거짓·과장의</p>	<p><b>제20조(규제의 재검토)</b>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4. 11. 17., 2014. 11. 19., 2017. 7. 26.&gt;</p> <p>1. 제11조에 따른 온천목욕장의 수질기준: 2014년 1월 1일</p> <p>2. 제12조제1항에 따른 온천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 2014년 1월 1일</p> <p>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lt;신설 2014. 11. 17., 2014. 11. 19., 2017. 7. 26.&gt;</p> <p>1. 제6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p> <p>2. 제8조의2에 따른 수문관측시설의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p> <p>3. 제19조에 따른 온천종사자 교육시간 등: 2015년</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전문개정 2008. 12. 26.]</p> <p><b>제37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개정 2016. 12. 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자</li> <li>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음용으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li> <li>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li> <li>3.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온천 종사자</li> </ol>	<p>표시·광고행위 금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 12. 30.]</p>	<p>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4.]</p>

온 천 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p> <p>[전문개정 2011. 5. 30.]</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7856호, 2006. 3. 3.〉</p> <p>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굴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토지굴착허가나 온천발견신고에 대하여는 제12조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온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8337호, 2007. 4. 6.〉</p> <p><b>제1조 (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b>제2조</b> 내지 <b>제8조</b> 생략  <b>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b> ① 내지 ⑪생략                  ⑫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22320호, 2010. 8. 4.〉</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b>제2조(온천의 성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b>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온천발견신고를 하는 온천부터 적용한다.  <b>제3조(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 전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의 신청이 있거나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다.  <b>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의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b> 이 영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  <b>제5조(굴착사용동의서에 관한 경과조치)</b>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7조제3항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686호, 1996. 7. 3.〉</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문관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수문관측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온천공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문관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온천발견신고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견신고된 온천에 대한 신고수리의 기준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34호, 1999. 2. 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99호, 2000. 6. 16.〉</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제10조제3항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p> <p>⑬ 내지 ⑰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8343호, 2007. 4. 11.〉</p> <p><b>제1조 (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b>제2조</b> 내지 <b>제10조</b> 생략</p> <p><b>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b> ① 내지 ⑱생략 ⑳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관광진흥법」 제50조"를 "「관광진흥법」 제52조"로 한다.</p> <p>⑭ 내지 ⑳생략</p> <p><b>제12조</b>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8852호, 2008. 2. 29.〉</p> <p><b>제1조 (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한 굴착사용동의서 유효기간의 다음 날부터 법 제12조제5항 및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제13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토지굴착동의서의 동의기간을 굴착허가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p> <p><b>제6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b>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본다.</p> <p><b>제7조(온천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b>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온천의 일시적 이용허가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p> <p>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온천의 일시적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③ 대통령령 제15107호 온천법시행령개정령 부</p>	<p>②(온천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온천전문기관은 제3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으로 보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별표 1에서 규정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37호, 2001. 6. 27.〉</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p> <p>②(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전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온천전문기관의 등록기준중 전문인력에 관하여는 이 규칙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별표 1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다만, . . . &lt;생략&gt; . . .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b></p> <p><b>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lt;211&gt;까지 생략 &lt;212&gt;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9조제1항, 제26조제3항·제4항,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4조제4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lt;213&gt;부터 &lt;760&gt;까지 생략</p> <p><b>제7조 생략</b></p>	<p>칙 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이 영에 따라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p> <p><b>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b>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② 「온천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온천자원 관측 사무를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설립된 온천협회에 위탁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22626호, 2011. 1. 17.&gt;</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b></p> <p><b>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④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1항제3호사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p> <p>⑤부터 ⑩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212호, 2003. 12. 30.&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267호, 2005. 2. 11.&gt;</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lt;제393호, 2007. 9. 18.&gt;</p> <p><b>제1조 (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b> 2006년12월 8 일 이전에 종전의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등으로 지정된 후 지정도면 등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2008년12월31일까지 그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2006년12월 8 일 이전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의 고시가 완료</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9202호, 2008. 12. 26.〉</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0005호, 2010. 2. 4.〉</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굴착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굴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굴착허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p> <p><b>제3조(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의 온천발견신고의 수리에 대한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 계산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p> <p><b>제4조(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등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b> 이 법 시행 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신청·지정되었거나 온천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을 때</p>	<p><b>제6조</b>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23718호, 2012. 4. 10.〉</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b>제2조부터 제13조까지</b> 생략</p> <p><b>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을 "도시·군계획"으로 한다. 〈51〉부터 〈85〉까지 생략</p> <p><b>제15조</b>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24425호, 2013. 3. 23.〉</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p>	<p>되었으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온천원보호지구 등의 경우에는 2007년12월31일 까지 시·도지사는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호, 2008. 3. 4.〉</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4조까지</b> 생략</p> <p><b>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온천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7호, 2008. 3. 24.〉</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 또는 온천개발계획의 승인을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732호, 2011. 5. 30.〉</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0892호, 2011. 7. 21.〉</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b>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b></p> <p><b>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⑳까지 생략</p> <p>㉓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3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p>	<p>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b></p> <p><b>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73〉까지 생략</p> <p>〈74〉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p> <p>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21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75〉부터 〈129〉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25050호, 2013. 12. 30.〉</p> <p>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25751호, 2014. 11. 19.〉</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p>	<p><b>제2조(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b>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54호, 2010. 8. 11.〉</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성분검사 주기에 관한 적용례)</b> 제12조제1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성분검사 결과를 통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b>제3조(온천발견 신고의 수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b> 법률 제10005호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의 온천발견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는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호 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p> <p>㉔ 및 ㉕ 생략</p> <p><b>제10조 생략</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690호, 2013. 3. 23.〉</p> <p><b>제1조(시행일)</b>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 생략</p> <p><b>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b></p> <p><b>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184〉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p>	<p>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b></p> <p><b>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18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p> <p>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186〉부터 ④1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25840호, 2014. 12. 9.〉</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호, 2013. 3. 23.〉</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b></p> <p><b>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②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p> <p>③부터 ⑤1〉까지 생략</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6항, 제7조제5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4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p> <p>제1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p> <p>〈185〉부터 〈710〉까지 생략</p> <p><b>제7조 생략</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1896호, 2013. 7. 16.〉</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26369호, 2015. 6. 30.〉</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생략</b></p> <p><b>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⑱까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⑳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제14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마.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p> <p style="padding-left: 20px;">㉑부터 ㉓까지 생략</p> <p><b>제4조 생략</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27205호, 2016. 5. 31.〉</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b>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③까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④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제14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51호, 2014. 4. 4.〉</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99호, 2014. 11. 17.〉</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호, 2014. 11. 19.〉</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b></p> <p><b>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⑮까지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⑯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2조(이행보증금 예치 및 원상회복 의무에 관한 적용례)</b>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2248호, 2014. 1. 14.〉</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b></p> <p><b>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81〉부터 〈126〉까지 생략</p> <p><b>제25조 생략</b></p>	<p>④부터 〈59〉까지 생략</p> <p><b>제3조 생략</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27858호, 2017. 2. 1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28211호, 2017. 7. 26.〉</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b></p> <p><b>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144〉까지 생략 〈145〉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p> <p>⑰부터 ⑳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91호, 2016. 12. 15.〉</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호, 2017. 7. 26.〉</p> <p><b>제1조(시행일)</b>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2737호, 2014. 6. 3.〉</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b></p> <p><b>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⑥까지 생략</p> <p>⑦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제3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개발촉진지구"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을 "지역개발계획"으로 한다.</p> <p>⑧부터 ⑬까지 생략</p> <p><b>제10조 생략</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2738호, 2014. 6. 3.〉</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b>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146〉부터 〈388〉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28521호, 2017. 12. 29.〉</p> <p><b>제1조(시행일)</b>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7조의 개정규정, …〈생략〉…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 생략</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30795호, 2020. 6. 23.〉</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b></p> <p><b>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b> ①부터 ⑭까지 생략</p> <p>⑮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별지 제1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p> <p>⑯부터 〈64〉까지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87호, 2020. 6. 23.〉</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④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1항제25호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p> <p>④부터 &lt;65&gt;까지 생략</p> <p><b>제3조 생략</b></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797호, 2014. 10. 15.〉</p> <p>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p> <p style="text-align: center;">〈제12844호, 2014. 11. 19.〉</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b></p> <p><b>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lt;92&gt;까지 생략</p> <p>&lt;93&gt;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및 제2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전단·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p> <p>&lt;94&gt;부터 &lt;258&gt;까지 생략</p> <p><b>제7조 생략</b></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3401호, 2015. 7. 20.〉</p> <p>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3805호, 2016. 1. 19.〉</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b></p> <p><b>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lt;51&gt;까지 생략 &lt;52&gt;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1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lt;53&gt;부터 &lt;86&gt;까지 생략</p> <p><b>제22조 생략</b></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4284호, 2016. 12. 2.〉</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적용례)</b> 제10조의2제3항 후단 및 제16조의2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4480호, 2016. 12. 27.〉</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b>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b></p> <p><b>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④까지 생략</p> <p>⑤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8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p> <p>⑥부터 &lt;65&gt;까지 생략</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4795호, 2017. 4. 18.〉</p> <p><b>제1조(시행일)</b>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p> <p><b>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b></p> <p><b>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⑤까지 생략</p> <p>⑥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10조의2제1항제4호 중 "제37조제1항제9호에"를 "제37조제1항제7호에"로 한다.</p> <p>⑦ 및 ⑧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b>부 칙</b> 〈제14839호, 2017. 7. 26.〉</p> <p><b>제1조(시행일)</b>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b>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b></p>		

온천법	온천법 시행령	온천법 시행규칙
<p><b>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b> ①부터 &lt;75&gt;까지 생략</p> <p>&lt;76&gt;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4호,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4조의2제1항·제2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7조의2제1항제4호, 제29조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p> <p>제5조제6항, 제7조제7항, 제9조제2항·제3항·제5항, 제10조의2제5항, 제11조, 제12조제5항 후단, 제14조제3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p> <p>&lt;77&gt;부터 &lt;382&gt;까지 생략</p> <p><b>제6조</b> 생략</p>		

[별표 1의2] <개정 2016. 12. 15.>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제4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법제7조제4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제7조제4항제3호	등록취소	
4. 정당한 사유 없이 온천전문검사를 기피·지연하는 경우	법제7조제4항제4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5. 거짓으로 검사하거나 거짓으로 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4호	등록취소	
6.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7조제4항제5호	영업정지6월	등록취소
7. 영업정지 기간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법제7조제4항 제6호	등록취소	

[별표 1의3] <개정 2007.9.18>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제6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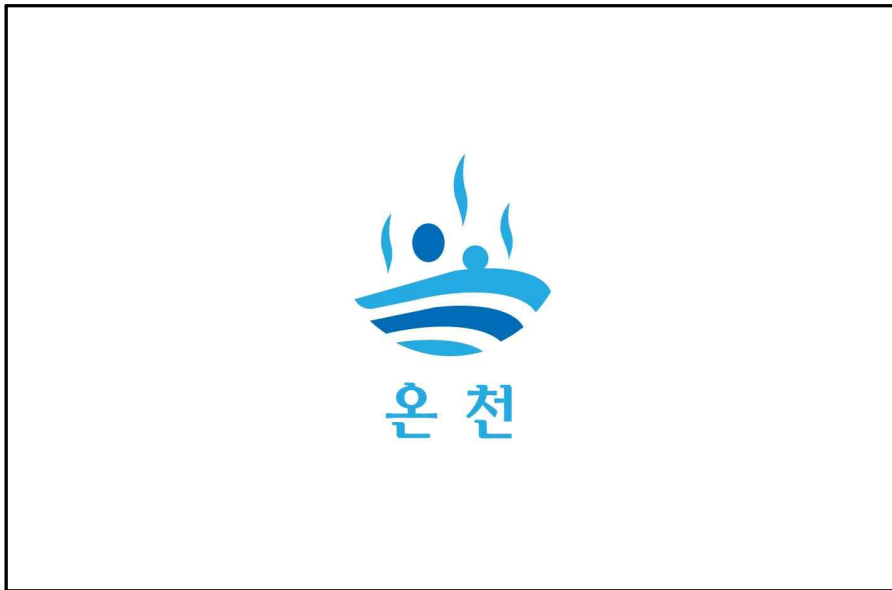
온천개발면적(제곱미터)=66.2×일일적정양수량(톤)

비 고

- 1. 삭제<2003.12.30>
- 2.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의 소유일 경우 1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개발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8.3.24.>

### 온천표시(제10조의2 관련)



비 고

- 1. 온천표시: 짙은 파란색 (Pantone 293 C), 파란색(Cyan 100%)
- 2. 글씨: 파란색(Cyan 100%)
- ※ 이 표시판의 규격은 현장사정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온천표시 및 글씨는 유사한 계통의 색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글씨는 온천, 溫泉, HOT SPRING으로 단독 또는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온천이용허가업소 외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별표 3] <개정 2020. 6. 23.>

###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제11조관련)

#### 1. 목욕물의 수질기준

- 가. 원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욕조수(浴槽水)
  - 1)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되, 총대장균군은 1ml 중에서 1개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균총 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遊離殘留鹽素) 농도는 0.2mg/L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 3)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 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2. 수질검사방법

- 가. 원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에 따르고 욕조수의 총대장균군 검사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총대장균군 시험방법 중 평판집락시험방법에 따른다.
- 나. 욕조수의 총대장균군을 검사하는 경우에 채수방법은 욕조의 대각선(욕조에 대각선이 없는 경우에는 욕조의 양쪽 끝간의 거리가 가장 긴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욕수를 3등분하여 물의 표면에서 같은 양의 욕수를 채수하되, 균일하게 혼합하여 1개의 시료로 사용한다.
- 다. 총대장균군 시험용 시료는 멸균된 100ml 이상의 용기를 이용하여 무균적으로 채취하고 한번 채취된 시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저온(10℃이하)의 상태로 6시간 이내에 검사실로 운반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시료채취 후 24시간 이내에 분석을 시작하여야 한다.
- 라. 1개의 용기에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1L 이상 채취하고 봉인해 검사 기관으로 수송해야 한다.
- 마. 욕조수의 레지오넬라균 검사방법 등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표준화된 검사방법에 따른다.
- 바. 욕조수의 유리잔류염소농도 검사는 적합한 검사 도구를 이용해 그 사용방법에 알맞은 방법으로 검사한다.

[별표 4] <개정 2020. 6. 23.>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의 검사기관·검사주기 및 검사항목  
(제12조제1항관련)**

구분	검사기관	검사주기	검사항목
수질 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도의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제1 항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 탁할 수 있다)	연 1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 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체에의 유해여부 (음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응용적합여부를 포함한다)
성분 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온 천전문검사기관(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온 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5년마다 1회. 다만, 유황성 분(total S-2 성분함량), 유 리탄산(free CO <sub>2</sub> ) 성분의 경우는 연 1회 이상 실시한 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 치도지사·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주기 전에 직권으로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1. 주요성분 2. 온도 3. 이용에 따른 효과 4. 이용에 있어서의 주의사항

[별표 5] <개정 2010.8.11>

**온천공검사방법 및 검사보고서 작성항목(제13조제3항관련)**

1. 온천공 검사방법
  - 가. 물리검층, 온도검층
  - 나. 단계양수시험
  - 다. 장기양수시험(48시간)
  - 라. 성분검사
  
2. 온천공검사보고서 작성항목
  - 가. 개요(위치 및 검사범위 등)
  - 나. 지형 및 지질
  - 다. 검사공 현황 및 수위변화
  - 라. 물리검층과 온도검층
  - 마. 단계양수시험
  - 바. 장기양수시험
  - 사. 양수시험시 수온·간이수질 변화
  - 아. 성분분석 및 해석
  - 자. 종합결과(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성분 등)
  - 차. 시험성적서 등 관련자료 첨부







[별지 제1호의5서식] <개정 2017. 7. 26.>

제 호

온천전문검사기관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3. 대표자 주소:
4. 영업소 소재지:
5. 영업의 종류:
6. 등록조건:

「온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8.11.>

##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변경된 온천개발계획)과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 내용	위 치			
	면 적			
	사유 및 기대효과			
온천 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 붙임 : 1. 지리적 여건  
 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유)  
 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  
 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  
 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  
 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2010.8.11.>

### 온천개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0일
상호(명칭)		법인번호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위치			
	면적			
	사유 및 기대효과			
온천현황	용출온도	℃	성분유형	
	적정 양수량	톤/일	수위강하량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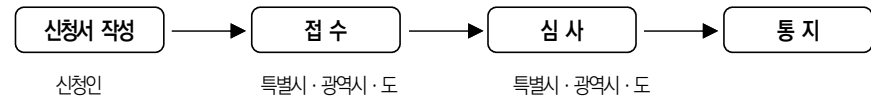
「온천법」 제10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온천개발계획(변경된 온천개발계획)과 그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리적 여건</li> <li>2.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필요한 사유(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변경하려는 사유)</li> <li>3. 예정지구 안의 토지조서</li> <li>4. 예정지구 안의 온천자원에 관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li> <li>5. 예정지구 면적의 타당성 및 온천의 경제성 검토결과보고서</li> <li>6.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끝.</li> </ol>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6. 23.>

### 토지굴착 등 허가 변경허가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연월일	허가 제 호(                   년                   월                   일)			
굴착위치			지목	
내용	심도	구경	채수량 m <sup>3</sup> /일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자	대표자	상호	면허번호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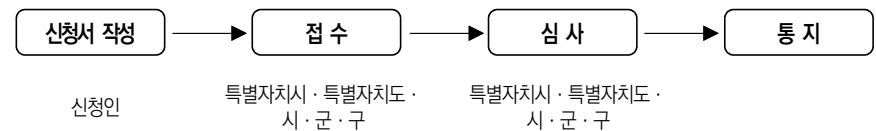
「온천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토지굴착 등의 허가(변경허가·유효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소유권자의 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li> <li>2. 굴착예정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입야도</li> <li>3. 굴착 및 복구계획서(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 대신 용출구 확대 및 심도 증가에 관한 설계도서를 제출합니다.</li> <li>4.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li> </ol>	수수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토지의 굴착허가: 공당 6만원</li> <li>2.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용출구 확대 또는 심도증가 허가: 공당 3만원</li> </ol>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0. 6. 23.>

### 온천굴착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굴착위치			지목	
내용	심도	구경	채수량 m <sup>3</sup> /일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자	대표자	상호	면허번호	
사유				

「온천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온천굴착 신고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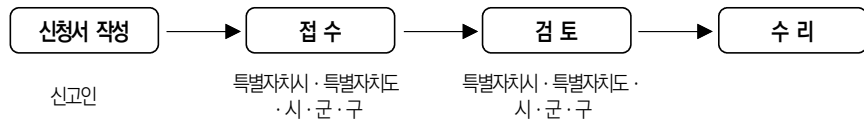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 소유권자의 온천굴착사용 동의서(타인소유 토지를 굴착하려는 경우에 한합니다)</li> <li>온천굴착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li> <li>복구계획서 및 굴착단면도(각각 설계도서를 첨부해야 합니다)</li> <li>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온천부존가능성 조사결과보고서</li> </ol>	수수료 없음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6. 23.>

### 동력장치설치(변경) 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전화번호	
허가번호 및 연월일	허가 제 호(년 월 일)			
설치장소			지목	
설치 또는 변경내용	마력	용출량	m <sup>3</sup> /일	
설치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유				

「온천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동력장치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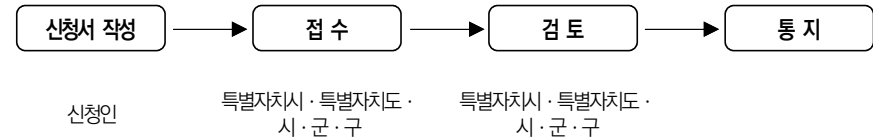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력장치의 설계도서</li> <li>수문관측시설 명세</li> </ol>	수수료 설치 : 개소당 3만원 변경 : 개소당 1만5천원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6. 23.>

### 수질(성분)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토지굴착 허가번호	허가 제 호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온천공위치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제 호 공
이용업소명	소재지			
이용 허가번호	허가 제 호	연월일	년	월 일
수질(성분) 검사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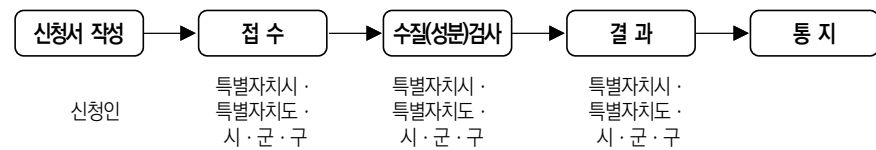
「온천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온천의 수질(성분)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 6. 23.>

### 온천발견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발견위치				토지의 용도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성명
발견경위				소유자 주소
발견내용	발견공수			공 온천공의 지름 mm
	온도			℃
	1일 적정 양수량			톤
	심도			m
발견지역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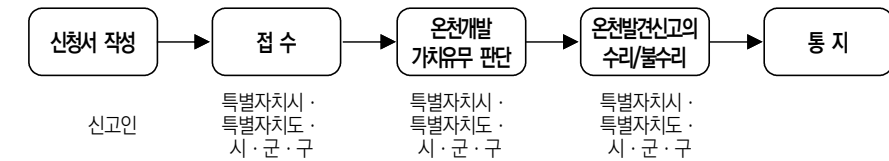
「온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온천을 발견하였음을 신고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지적현황측량성과도 2. 온천공검사보고서	수수료	없음
------	-----------------------------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8.11.>

## 온천관리대장 ( )온천

(앞쪽)

온천소재지									
온천 발견상황	온천법 제정 전부터 이용한 지역				온천법 제정 후 신규 지정된 지역				
	최초이용시기(연대)				발견신고일자	수리신고일자	발견자 인적사항		
온천공이 발견된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소유자 성명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	지정일자		지정면적		온천전문검사				
					검사기관명		검사기간		
	1일 적정 양수량		개발적정면적		굴착공수		용출온도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상황	수립일자	개발계획면적						비고	
		계	온천이용 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녹지시설	기타시설		
	개발주체	총사업비		사업기간		개발후 수익액		시설계획	
	개발방식 (개발면적)	행정조치사항(조치일자)						개발추진 상황	
	국토이용 계획변경	도시계획변경	관광지 지정	환경영향평가	기타조성 계획승인				
온천현황	온천공	온천공수	이용허가공수	미허가공수 (폐공수)	심도 (최고~최저)	지표로부터의수위 (최고~최저)	공내안정수위 (최고~최저)		
	온도 및 수량	온도 (최고~최저)	일일 적정 양수량 (톤/일)	허가가능량 (톤/일)	이용허가량 (톤/일)	천질 (주요성분)		음용가능여부	
	효능								
이용현황	이용객			1일최대 수용능력	이용시설				
	1일최대	1일평균	연간이용객		계	호텔	여관	온천장	기타
온천자원 보전관리	온천자원 조사실적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실적		수문관측 시설설치상황				
	· 조사주기 · 조사기관 · 조사결과		· 검사주기 · 검사기관 · 검사결과		· 수위측정관(내경 30mm이상의 내열·내압성관) 또는 수위측정장치 · 유량계 · 온도계				
온천자원 보전관리 조치상황									

210mm×594mm[보존용지(2종) 7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23.>

제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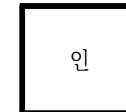
## 허 가 증

1. 성 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
2. 주 소:
3. 위 치:
4. 허가종별:
5. 허가내용:
6. 허가기간:
7. 허가조건:

「온천법」 제 조제 항에 따라 (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0. 6. 23.>

(앞 쪽)

제 호

**온천출입검사원증**  
(유효기간: )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55mm×85mm[보존용지(1종)120g/㎡]

(색상 : 하늘색)

(뒤 쪽)

**온천출입검사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온천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는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직인  
**시장 · 군수 · 구청장**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하여 온천수의 온도 · 성분 · 유출량 및 이용상황 등을 검사할 때에는 이 검사원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2021 온천업무편람

발 행 일 2020년 12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Tel. (044) 205-3523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인 쇄 디자인범신 (042) 254 8737

---

※ 본 책자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시려면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